

경찰, 사업주 재단 측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정법영 (18세)

1977년	청주신학대 입학
1978년 3월 17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신흥제분, 조광피혁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을 건 4개월 간의 단식투쟁 의문의 죽음을 당함
7월 8일	

빠져 있었으며 이후 5일간을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7월 8일 운명하였다.

1973년 청주지역에 도시산업선교가 시작될 무렵 중학생으로 사회선교와 현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8년 3월 노동자들은 퇴직금문제로 장기적인 농성을 전개하는 과정이었으며 농민 소작인 중 한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뜻매를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단식 농성으로 맞서 투쟁하였고 정법영도 같이 투쟁에 참여하면서 경찰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민중생존권 수호를 위한 궐기 과정에서 113일이 경과되도록 문제 해결이 안되자 심리적 갈등을 겪던 정법영은 정체불명의 친구들을 몇 번 따라다니며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78년 7월 4일에도 정체불명의 친구들과 만난 후 청주 성가의원에 혼자 가서 약을 먹었다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했다. 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미 혼수상태에

1959년 12월 15일	경남 의창 출생 한독직업훈련원에 다니다 가정사정으로 중퇴
1984년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 입사
1987년 5월 26일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운동에 참여
1987년 6월 8일	실종
1988년 3월 2일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됨

정경식 동지는 3년동안의 월급으로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저축할 정도로 검소하고 생활력이 강했으며 동료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원만하였다고 한다. 기숙사 생활 중에도 놀라갈 때는 빠짐없이 집으로 연락했으며 월급을 타면 집에 꼬박꼬박 맡기고 용돈을 타 쓸 정도로 성실했다. 정씨는

노동자로서의 의식도 투철했는데 86년 5월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 팔을 다쳐 4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을 때, 문병은 동료들에게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특히 젊은 층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퇴원한 이후부터는 노조를 민주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다.

< 민주노조 하자는데 의문사가 웬말이냐 >

1. 사건 개요

1) 실종전 대우중공업 지부장 선거관계- 정경식씨 실종 살해사건의 배경

1987년 5월 15일경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관계로 들뜬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노조 지부장 선출은 간선제였으며 선거일은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효영씨가 후보로 나선 젊은층 중심의 민주노조 건설측과 서석교씨(52년생, 수년전에 미국에 가 있다가 노조지부장 선거 전에 귀국하였다 함) 측이 서로 대의원을 자가를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정경식 동지는 김효영씨를 지지하였는데, 퇴원 후에도 지지 확대활동을 하는 등 이 일에 대단히 열성적이었다고 한다.

정동지의 실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홍고식씨는 정동지와 입사 동기생이며, 입사후 계속 기숙사의 같은 방을 썼던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홍씨는 김효영씨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또 한사람의 직접 관련자인 이동석씨는 서석교씨 지지활동을 벌였는데, 선거전에 여러번 홍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것이다.(선거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는 홍씨가 이씨에게 매수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고 한다)

5월 26일 노조지부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서씨가 65로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홍씨가 서씨를 지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동석씨는 노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5월 28일 예비군 훈련이 끝난 후 퇴근길에 정동지는 홍씨에게 “노동자는 노동자 편에 서서 단결하는 것이 옳지 회사 편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고, 이동석씨에게 “얼마나 돈을 먹고 회사편을 드느냐”고 말하자 이동석씨가 정동지

를 떠 밀었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정동지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동석씨의 코에 머리가 부딪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주변 동료들과 패싸움 비슷하게 약간 충돌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씨는 3주 진단을 끊어 창원 경찰서에 정동지를 고소하였다. 이씨는 정동지에게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정동지는 5월 28일 이후 거의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이씨를 보고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실종

6월 8일 정동지와 홍씨가, 이씨가 있는 기숙사(106호)에서 만나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결렬되고 이씨는 15분만에 먼저 떠나고 2시간후 정동지와 홍씨 양인도 기숙사를 나왔다고 한다.(이는 홍씨의 증언으로 이에 대한 목격자는 전혀 없음) 기숙사를 나온 후 정동지는 작업복, 운동화 차림으로 우산을 쓴 채 차를 기다렸고, 홍씨는 잠을 잤다고 한다.(후에 공장에서 일했다고 번복) 이후 정동지는 본 사람이 없고 6월 9일 동공장 근로자 이춘일씨가 정동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정동지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알려왔다.

이후 정동지의 어머니는 회사와 홍씨를 접촉하며 물어보았으나 별 대답을 못듣고 11일 창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시킨 뒤 각계에 진정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정동지 어머니는 회사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회사 노무부장 상병수로부터 「정이 악을 먹고 죽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9월 27일 정동지의 어머니가 이동석씨에게 「네가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씨가 「그렇다」고 3번 반복하여 대답하였다. 10월 3일 정동지 어머니와 형이 이씨를 파출소로 끌고가자 경찰이 이씨에게 「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고 나무마루 이들을 쳐아냈다. 이씨는 어머니에게 「회사에 말하면 500만원만 들이면 너를 죽일 수 있다」고 했다 한다.

3) 사신발견 - 제1차

12월 12일, 창원시 동성동 천주산 관유사 부조에서 벌목중 이던 수목 전지사 이용우, 이순우, 강중열, 이명환씨 외 성명 불상 1명이 변사체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당시 사체의 상태는 “검은 색 머리카락이 두 개골에 15개정도 불어 있었으며 농약병은 낙엽에 쌓여 꼭지만 보였다. 시체는 나뭇가지에 걸

려 있었는데 파란판에 좀 두꺼운 세이코였다. 아래턱 뼈가 두 개골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이뼈에 앞니 2개가 있었다. 유골 전체는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뼈는 하얀 색깔인 것으로 보아 죽은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체인 것 같다”고 최초 발견자는 증언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창원 경찰서는 정경식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채 사체 검시를 하고선 검시 결과 두 개골에 흰색 모발이 붙어 있었고 이빨이 없는 상태로 “50세 이상이고, 5년이상 지난 변사체”라고 규정하고 정경식이 아니라며 가매장 시켰다.

이후 가족의 재조사 요구에도 정경식 동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오른팔 뼈(정경식 동지는 팔이 골절되어 철사를 박은 흔적이 있다고 함)와 이빨이 없다(처음 빌굴자는 분명히 보았다고 함)는 이유로 정경식 동지와 결부시키지 말고 단념하고 협박하였다.

그 뒤 가족의 끈질긴 주장에 가매장된 사체를 다시 확인해 보니 두 개골의 반정도만 흰 머리카락이 접착체로 붙인 흔적이 뚜렷하였고, 오른쪽 상완골에 상처가 나 치유된 흔적과 팔목에 쇠를 대었다가 없애버린 흔적이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발견 장소에 흑색머리카락이 한줌 짤라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사체 조작흔적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88년 2월 23일 발견한 사체를 정경식의 사체가 아니므로 수사를 종결짓자고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해왔다.

4) 시신발견 - 제2차

1988년 3월 2일 “삼성항공 2공장 옆 야산(불목산)에서 산불 진화중 산불방지 요원이 변사체를 발견하고는 현장에서 출입증을 주어서 보니 정경식이란 이름이 있어 회사측으로 연락이 와서 전화한다”는 요지로 국민운동 경남 본부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족과 정경식 실종사건 경남대책위 관계자, 경찰, 안기부 검시의사 등이 현장 검증을 하였다.

현장 입구 밑으로는 산불이 전혀 나있지 않았으며, 뼈가 사방에 널려져 있었다. 두개골에서 조금 위쪽으로 팔뼈가 두 개 놓여 있었으며, 그 위쪽으로 밤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고 밤나무 아래 바위 밑에 철심을 박은 팔뼈가 하얀 색깔로 퇴색되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국방색 멜방끈이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씨가 나무목에서 목을 매자살한 것으로 결정, 사건을 종결시켰다.

2. 의문점

1) 합의금 150만원이 없어서 비관 자살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 : 정경식은 2년간 대우중공업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여 800만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싸움의 발단이 노조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일어난 우발적인 싸움으로, 정경식이 지지한 민주노조 이효영 후보진영에서 합의금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 비관 자살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조사이며, 지금은 통장이 유실되고 없으나 예금잔고가 비디오 테이프에 적혀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반증의 자료이며 경찰의 주장은 억지이며 사건축소하려 한 것이다.

2) 산화 발생의 의문점 : 불모산 사체 유골발견은 88년 3월 2일 산화발생으로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 감독원에 의하여 사체도 아닌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3월 2일 이어야 했던가 하는 것이다. 산화발생(산불) 다음날 3월 3일은 천주산에서 발견된 유골(진정인이 자식의 사체를 찾기 위해 연고 없는 사체에 대해 자식사체라고 주장하며 문제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이 3월 3일 준비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산에 화재가 발생하고 뼈가 산에 뿌려져, 사회여론의 고조로 인하여 유족이 주장한 천주산 사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기자회견을 무산 시키려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하겠다.

3) 출입증 상태에 대한 의문점 : 산불요원이 출입증을 주워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출입증의 집계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 녹이 슬지는 않겠으나 코팅된 비닐은 자연환경 속에서 헛빛에 노출되어 직사광선을 쪘면 색도 투명해지는 것이 자연법칙인데 9개월간 야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퇴색되지 않고 깨끗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산불이 발생하여 정경식이 당시 출입증을 옷에 부착하고 있었는데 산불로 인해 옷이 거의 다타 재만남은 그자리 유골위에 비닐코팅하나 손상없이 발견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유골이 있는 자리에 거쳐다 놓은 것 같다.

4) 유골발견에 대한 의문점 : 유골 발견현장은 민가와 100M 거리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밤을 수확하는 곳이다. 사체현장에 이르는 길은 오솔길로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87년 6월 8일 정경식이 목메달아 자살했다고 가정한다면 밤 수확시기인 가을과 추석, 설날에 산소를 찾는 성묘객들에 의해 충분히 발견되었을 것이며, 이곳에는 밤이 결실되어 사람들이 겹질을 벗긴 흔적과 밤을 파는데 사용한 훌대(밤을파는 도구)도 1개가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곳인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친족인 정차식씨가 87년 6월 마을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사방을 수색할 때 저기 저들(유골이 발견된 장소)위에서 담배를 피웠던 장소였다. 즉 이를테면 그당시 들위에서 담배를 피우다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정경식이가 이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이송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5) 자살현장에 대한 의문점 : 이곳이 자살현장이라면 유골의 모양이 인체의 구조형태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검안의사의 말이 이유골에는 “동물이 침범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유골이 가로 13M, 세로 8M 이상되는 면적에 방대하게 뿌려지듯 흩어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검안 의사의 한말이 “동물이 침범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말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반증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큰 어깨뼈가 가면 손가락뼈도 따라가야 하는데 잔뼈는 한곳에 뒤섞여 있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무시한 인간의 소행이라 본다.

6) 목을 매었다는 나무에 관한 의문점 : 목을 매었다는 끈이 묶여 있는 나무는 직경이 4cm의 밤나무로 정경식이 이 나무에 목을 매었다면 나무가 휘어져 죽 쳐져서 밭이 땅에 닿거나 나무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 도저히 자살을 기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끈이 묶인 나무가지는 혼자의 힘으로는 손이 닦지 않는 높이에 위치해 끈을 묶을 수도 없는 높은 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목을 매었다면 나무가지에 끈이 묶인 흔적이 남아야 되며, 목인자리가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해 감정을 요구했으나 경찰

당국의 명백한 해명이 없었고 며칠 후 경찰에서는 부모의 항의를 받고 가지를 잘라가 버리고 말았다. 이는 증거인멸의 기도에서 행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자연환경에 대한 의문점 : 목을 매달았다 하는 나무 밑에는 목뼈, 어깨뼈 등 수십개의 뼈가 있었으나, 87년 6월 8일 목을 매었다면 심한 부패로 인해 썩은 사체의 육수가 떨어져 땅을 시커멓게 변색(퇴색)시킨다고 하며, 목을 매단 자리의 흙에 대한 감정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여름이면 부패가 심해 사체가 썩어 땅에 빠까지 다 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면 가을철 낙엽들이 빠와 옷을 덥고 있어야 하는데 밤송이와 낙엽들이 빠밀에 깔려있었다. 또한 자연법칙상 사체에서 흐르는 육수가 식물을 말라죽어야 하거나, 성장을 촉진시켜 왕성하게 성장되어 주위의 풀과 많은 차이를 느껴 일반인의 육안으로도 충분히 감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위환경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유골을 유기 했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며 이자리에서 목을 매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8) 사체의 자연노출에 대한 의문점 : 아래턱뼈에 이빨이 빠져 없었으며 270여일이 지나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빨이 빠진 자리에 이물질이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분명 사체가 밀폐된 장소나 공간(햇빛과 바람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9) 신발의 상태와 발견장소의 의문점 : 나무에 목을 매었다면 사체가 부식하면서 그자리에 그대로 떨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발 한짝만 사체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신발은 대체로 깨끗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였다. 또한 신발 끈은 발등에 끈이 꽉조여져 있었고 잡아당긴 끈이 위로 쭉 올라와 있음은 타인이 신발 끈을 잡고 옮겨놓지 않고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한다.

10) 목을 매는 끈에 대한 의문점 : 나무에 매달려 있던 끈은 국방색 멜방끈으로 9개월 동안이나 자연상태에서 햇빛에 노출 되었다면 당연하게 색깔이 퇴색되어야 하나 원색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산불로 인해 옷가지 등이 불에 다 탈 정도면 나무에 매달린 끈 또한 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이 의혹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11) 목격자가 없다는 의문점 : 여기서 정경식이 1공장에 들어 갔다가 나갔다고 하나 당사자 이동석과 홍근식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난 사람도 없고 본사람도 없다하는 것이다.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인 것이다. 땅속 지하실로 가지 않았다면 왜 본사람 목격자가 사건 당사자 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석이는 유족과 만남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이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진실로 정경식이가 자살을 했다면 지금까지 가족과 이사건에 대해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12) 결론

· 정경식 개인 통장에 800만원 저축과 이효영 후보진영에서 150만원을 마련했다.

· 3월 2일 화재발생과 3월 3일 천주산 사체 발견 및 기자회견 준비에 대한 의문점

· 훼손되지 않은 출입증 상태의 의문점

· 87년 6월 8일에 실종되었고 87년 가을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일반인들이 범들 까먹은 혼적과 왕래가 짙은 곳인데 발견되지 않았던 점

· 동물의 침범흔적이 없고 사체(유골)가 한곳에 차곡차곡 쌓여있어야 하는데 방대하게 사방에 흩어졌어 발견된 점

· 나무에 혼적이 없고 경찰이 나무를 가족과 협의 없이 잘라버린 점

· 자연법칙상 사체 주위에 토질 변색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 유골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 신발이 같은 장소에 없고 멀리 떨어져 한짝만 있으며, 신발상태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

· 나무에 매달린 끈이 변하지 않고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 실종당일 기숙사에서 둘이 만나 나갔다는 목격자가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정경식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추정되며 타곳에서 이곳에 유기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사건과 87년의 정치상황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타살의 혼적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다. 87년 6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움직임은 마산, 창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7·8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노동현실의 벽을 허물려고 봇물처럼 터져나온 현실을 본다면 노조선거와 관련 고의에 의해서 이건 타의에 의

해서 이건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 오범근

1973년	후지카 대원전기 입사
1976년	프레스공으로 작업 중
	손가락 네 개가 잘리는 산재를 당함
1988년 3월 10일	이후 수위로 근무 의문의 죽음을 당함

오범근 동지는 산재 이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약간 경비근무 중 옥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골수염으로 무릎뼈를 깎는 수술을 하는 등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나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부인 또한 생활비를 보태려고 대원전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 결핵에 걸리는 등 어려움이 겹쳤지만 항상 웃음과 자상함을 잊지 않았으며 극진한 효성으로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이웃과 동료들은 말한다.

1. 사건 경과 및 의문점

3월 7일 “사직강요, 해고 위협, 어용노조 물러가라” “25% 임금인상, 학자금, 기족수당 생취하지”는 요구를 내걸고 파업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으로 해산되자 10일 새벽 회사로 출근해 같이 근무하는 수위들을 만나 폭력해산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 측의 호출을 받고, 항의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4층 관리자실로 올라갔다가 음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파업농성에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을 해온 오범근 동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이날 10시 20분 경에 사망했다.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오범근 동지의 자살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1) 유서가 없다. 자살을 사전에 생각했더라면 유서를 남기기 마련이다.

2) 성실하고 꾸꼿하던 생활태도를 볼 때 자살할 만큼 의지가 약하지 않다.

3) 사망 당일도 구사대의 파업농성 과괴에 분노하면서 회사측의 호출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다녀온다고 하며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왜 대책회의 중인 전무이 사실에서 음독했겠는가.

4) 회사 측은 오범근동지가 평소에도 자살하려고 독극물을 갖고 다녔다고 하지만 한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시기가 지나면 독극물 등을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5) 오범근 동지가 술에 취한 채 쓰러진 것을 병원에 옮겼으나 곧 사망했다는 경찰의 허위보고가 사망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증거이다.

3월 20일 새벽 5시 30분 오범근동지의 시신은 400여명의 전경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병원에서 고향으로 옮겨졌다.

■ 문용섭

1986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망우리 광무택시 입사
1988년 6월 9일	구사대의 폭행으로 운명

가난해도 의리의 사나이

1. 사건 경위

지난 1988년 6월 6일 서울 동대문구 망우리 소재 광무택시(사장 : 노명재) 운전기사 문용섭씨가 회사측이 키운 구사대의 한 사람인 신세일에게 맞아 동부 제일병원에 입원 중 6월 9일 숨졌다.

문용섭 기사는 구리시 교문리에서 부인과 3자녀(1남 2녀)와 함께 보증금 2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가난하게 살아 왔으면서도 몸이 아파 생계가 어려운 친구를 위해 집에 있는 쌀

을 전부 펴다가 주고 자기는 가족과 함께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의롭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한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회사 관리자들에게 바른 말을 잘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동료들에게는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회사 노용복 부장과 노용운 과장 등이 힘없는 기사들에게 각종 구설로 돈을 뜯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함으로써 회사의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열려 왔다.

광무택시는 사장 노명재의 조카들인 노용복 관리부장, 노용운 관리과장 등이 함께 운영하는 전형적인 족벌체제이다. 관리부장 노용복은 때로 문용섭 기사와 같이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는 기사들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 관리과장 노용운의 소개로 정경, 신세일, 김문기 등을 입사시켜 의도적으로 회사과 기사로 키워왔다. 그리하여 지난 5월 7일 서울지역 택시총파업 당시에는 정경, 신세일 등 입사 2개월도 안된 신입 기사들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동원(일반 기사들은 빌려 타기가 대단히 어렵다)하여 파업에 동참하자던 고참 운전기사들에게 ‘망우리 뒷산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차에 탈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은근한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노부장에게 대드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깡패같은 회사과 기사를 구사대로 키워 기사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해 왔다.

노용복 관리부장과 노용운 관리과장은 스파이 기사들에게 돈을 걸어오게 하고, 사고처리하면서 돈받아 먹고, 생일날 축의금을 갖다 바치게 하고, 이사 비용 모자란다고 돈걷어오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들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사장이 삼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기사들을 아부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하여 기사들로부터 양주로만 술을 얻어 먹는 파렴치하고 관리능력이 전혀 없이 봉건적 권위만을 내세웠던 자들이다. 문용섭 기사는 이러한 비리를 그때 그때 수첩에 기록하여 폭로하겠다고 했으니 노용복 부장이나 노용운 과장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사건이 발생한 6월 6일 오후 근무조였던 문용섭 기사는 일을 나가지 않고 1,000원을 입금으로 잡아놓고 노용운 과장에게 ‘노부장과 회사의 비리를 밝힐 수 있게 2주일간의 휴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편 이날 정경, 신세일과 함께 자기 집 이사를 하던 노부장은 노과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회사로 달려와서 포장마차에서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문기사를 해고시킨다는 소문 문제로 문용섭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노부장이 포장마차에서 나간 뒤 같이 있던 정경과 신세일이 문기사에게 '자꾸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면 수벌업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포장마차 안에는 신세일, 정경, 정승철(기사), 포장마차 아주머니 2명이 있었다고 한다.

말다툼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힘악해지면서 신세일이 담배로 문기사의 얼굴(코侑)을 치쳤다. 이에 문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세일에게 다가가자 신세일이 가격을 하여 문기사가 포장마차의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불잡았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포장마차 문 밖 보도로 쓰러져 뒷머리를 보도에 부딪혀 실신하였다.

이상은 신세일, 정승철의 증언이며 정경은 술마시기에 바빠 보지 못하였다고 위증(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음)하였으며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고기를 굽느라 보지 못하였다고 전술하였고 사건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2. 의문사항

1) 문기사가 평소 꿋꿋하게 가사들 편에서 생활해왔기에 회사측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으며, 노부장의 비리에 매우 분개하여 둘사이가 무척 나빴으며, 사건 당일 갖고 있던 비리를 적은 수첩이 없어졌고, 노부장 노과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신세일(당시 구속중)과 정경(사건이후 회사 출근 안 함)은 폭력 전과자로서 한때 같이 복역하기도 했으며, 회사측이 노조를 폭력적으로 탄압기 위해 고용한 자들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점.

2) 사건 현장인 실내포장마차는 문높이가 160cm가량이며 고인이 신세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는 천정에 단 판자 때문에 반드시 고개를 숙이면 다가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문밖으로 나가 쓰러진다 해도 엉덩이가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인이 키가 183cm의 큰키이므로 윗문 틀에 머리가 먼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윗문 틀은 손님들이 자주 부딪혀서인지 스치로풀을 대어 놓았다.

3) 고인이 쓰러지기전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포장마차의 문을 잡았었다면 그만큼 충격이 완화되어 크게 다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4) 고인은 몸무게 94kg, 키 183cm의 거구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신세일의 가격에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다.

5) 무엇보다도 고인의 부검시 모두가 의문시한 두개골의 가격점이다. 즉, 뒤로 넘어졌을 시 일반적으로 그 가격점은 머리 뒷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의 가격점은 머리의 가마부분에서 앞쪽으로 금이 가 있었다.

3. 사고가 난 직후(8시경)부터 병원에서의 상황

문기사가 쓰러지자 신세일, 정경, 정승철 등은 문기사를 정승철이 타고온 차에다 싣고서 문기사의 가방과 함께 망우리에 있는 제세병원으로 향했으나 제세병원 측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부제일병원으로 향하였다.

신고에 있어 회사측은 상무가 10(오후)시경 피출소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당일밤 11시 40분경 가족들이 신고하여 자정이 넘어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난 직후부터(오후 8시) 자정까지 무려 4시간 가량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직후 문기사의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였을 때 사고의 경위를 캐묻는 미망인에게 정경은 나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고아다' 라며 미망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 댔다. 또한 고인의 처제가 노부장에게 "우리 형부가 '노부장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노부장은 "그렇다. 언젠가 죽어도 내손에 죽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하라."하며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또한 정경과 신세일은 동부제일병원에 처음 데리고 잣을 때 술을 마시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처럼 위증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의사들은 단순히 뇌일혈로 생각하였으나 수술결과 두개골 골절상이었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축소, 단순한 개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협소화시키고 그마저 자연사인으로써 진상규명과는 반대의 길을 갔으며, 회사측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였고 가족들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에까지 시달려야 했다.

■ 배증순

대전고등학교 졸업, 구미 금성사 근무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 경과 및 의문점

유가족과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조합하면 배증순씨는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고, 술은 좋아하나 자체할 줄 알아 실수는 하지 않는 사람이며, 절대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키틀릭 신자로 부인과 두 딸(5세, 3세)과 함께 단간 월세방에서 어려우나 성실히 살아왔다고 한다.

배씨는 97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회사측의 휴업조치 이후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임금인상 평화농성과정에서 앞장서 싸웠고 구미의 원평성당에 있는 '국민운동본부'와 '카톨릭 근로자센터'에 혼자서 두어 차례 상담을 하러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회사측에 알려져 배씨는 부산에 있는 관리자와 함께 며칠간 강제출장(사실상 납치와 다름이 없다.)을 보내졌으며 부산에서 올라온 이후에 다시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출장명목으로 납치되었다. 회사측의 출장명목은 전국의 아프터서비스 지점 순방이었고 출장코스는 구미 - 포항 - 울진 - 동해시 - 강릉 - 속초 - 거진 - 홍천 - 춘천 - 원주 - 춘천 - 원주 - 충주 - 청주 - 대전 - 구미 순이었다고 한다. 관례와는 달리 배씨에게는 출장비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돈을 꾸어 써야 했고 납치과정에서 배씨는 삶에 대한 절망과 회의로 인해 연일 소주로 과음을 하여 9월초 생의가 끝난뒤 돌아왔을 때는 술자리에서 얼굴에 식은 땀을 흘리고 술잔을 든 손을 계속 떨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이런 배씨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변했다"고 했고 본인도 "내가 이상하니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10일간 대구의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이때 배씨는 휴직계를 냈는데 회사측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원직복직을 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약 7개월 만인 5월 5일에야 복직이 되어 현장 자체창고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건당일인 11월 14일 아침에도 웃으면서 출근하였는데

오후 5시경에 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관리자들이 찾아와서 배씨가 죽었다고 하면서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가자고 하였다. 부인이 영안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회사측에서 경찰을 불러 조사를 끝내고, 현장을 치웠으며 주변 동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끝낸 상태였다. 경찰은 부인에게 물으려 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면서 열쇠를 가져갔다. (영안실 직원 증언) 다음날 오전 10시경에야 사체를 보았을 때는 이미 깨끗한 모습이었다.

회사측의 얘기로는 12시 이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오후 4시경에야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비해 배씨의 동료인 남성택씨는 오후 2시 30분까지 같이 있었다고 엊갈린 진술을 했다.

배씨의 동료들은 배씨의 죽음은 원천적으로 재벌대기업의 일반적인 노동운동 탄압책인 "납치극"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금성사는 고도의 노무관리로 배씨의 죽음을 유도했으며 배씨는 죽음 당일까지 인사과에 불려가 심한 문책을 당했다고 한다.

■ 이재호 (25세)

1964년 5월 전북 부안 출생
중학교 졸업 후 가정을 둘기 위해 서울로 상경, 노동자 생활을 시작
1988년 1월 인천 협신사 입사
1989년 10월 29일 노조재건 활동 중 의문의 죽음 당함

노조재건 활동 중 피살되었는데....

지난 89년 10월 29일 0시 40분경 인천 주안4동에서 노조 관련 상담을 마치고 귀기하던 협신사(액자제조업체, 사장 이희천) 노조원 이재호씨가 둔기에 턱을 맞고 숨진채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다투다 사망한 폭행치사사건으로 종결코자 하였으나, 이재호씨가 그간 회사측에 의해 파기된 노

조를 재건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다 끊임없는 노조탄압의 협박속에서 많은 의문점을 남긴채 사망함으로써 동료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경찰에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였다.

당시 나온 경위서를 통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장 이희천은 군인사계 상사로 예편한 뒤 동생이 설립 운영하던 이 회사를 강탈,(회사슬로 묶고 폭행하여 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함) 8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였다. (유급휴일은 3.1절, 광복절 이틀 뿐이며 상여금 200%에 생리월차휴가도 전무하고 작업복 조차 지급 안함) 이에 항의라도 할라치면 사장이 고용한 폭력배에 가까운 관리자들이 서슴없이 폭력으로 응답하는 실정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89년 2월 27일 마침내 노조를 결성,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온갖 폭력을 동원해 노조탄압을 일삼고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장이 직접 농성장에 들어와 폭행, 감금, 감시하고 윗도리를 걷어 허리에 찬 가스총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집에도 가스총이 더 있다. 네까짓 것들 한놈 죽어도 까딱 없다. 내가 민정당 부위원장이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닌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머리에 겨누기까지 하는가 하면 제2공장 사장 장유환이라도 노조사무장을 폭행해 3주간 입원치료케 한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한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로 마침내 노조간부들을 강제 사직, 부당해고 시킴으로써 노조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제 호씨를 비롯한 협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7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노조 재건의 기치를 치켜들었고 회사측은 다시 탄압의 고삐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호씨 등 노조 재건위원들은 주안노동사목인 ‘내일을 위한 집’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문제와 노조 재건방안 상담을 하며 조언을 받아왔고 피살 전날인 10월 28일(토)에도 6시경부터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노조재건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회사측은 이날 회장실에서 최창옥 생산부장이 이재호씨에게 “같이 살고 있는 임영순, 김도형(노조재건 중심인물들임)이 따로 이사나간다는데 이사했느냐”고 ‘관심’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날밤 9시 동료조합원 5명과 함께 상담을 끝내고 술을 마시러 가기전에 이재호씨가 동료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회사로 전화를 했다가 그때까지도 회사에 남아있던 최부장과 통화를 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이외에 그와 통화, 대화한 사람은 최부장이 마지막임)

함께 상담은 동료 6명과 ‘내일을 위한 집’ 간사 1명이 함께 주안역 뒤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12시 정각경에 이재호가 아무 이야기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고 (평소 이재호씨의 주량(소주3병)으로 볼 때 소주 한병 정도로 취할 정도가 결코 아니었으므로 동료들은 회장실에 가는 줄 알았음) 다음날 새벽 3시 30분경 이재호씨와 같이 자취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 늦게 들어온 김도영, 임영순씨 자취방에 경찰이 회사관리자와 함께 찾아와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재호씨의 피살 이후 경찰은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회사 동료들만 불러다 요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분명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 제작시 범인의 복장, 체격, 도주로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불량배와 시비끝에 피살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추정하였으며(5m 떨어져 있던 목격자나 인근 음식점, 공업사에서는 싸움, 저항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함) 가족들에게 피살경위를 설명치 않고 술먹고 죽었다고 하며 사체를 회장 토록 유도했고 10월 30일에는 전단 작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재호씨가 입고 있던 피묻은 잡바를 세탁해 버렸다(혈흔, 지문, 시비의 흔적, 피살시 가격 방향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유력한 증거물임에도)이는 범죄수사의 상식 조차 무시한 잘못으로서 적어도 경찰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리려는 선입관과 예단을 가지고 노조탄압과 무관하다는 쪽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한편 회사측은 사건후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바, 상식적으로 피살과 무관한 경우 종업원의 사망시 조의금도 내지 않고 회사측과의 무관함만 강조한 것은 회사측의 관행성을 역설적으로 응변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뿐만 아니라 고인과 함께 노조재건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고 사표를 유도하였다. 또 한가지 고인의 신원확인의 단서는 당시 입고있던 T셔츠의 홀려쓴 한글자 ‘협’자 위에 한자 ‘信’자로 쓰여진 것뿐이며 이것을 ‘협신’으로 해독하기가 쉽지 않고 협신사는 114로 전화번호 문의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두어시간도 걸리지 않아 회사측 관리자가 관할 파출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재호씨는 면식범이나 계획적인 피살(실해는 목적치 않았더라도 혼내려는)이었을 가능성

이 크며 2월 노조결성이후 계속되어온 무자비한 노조탄압, 그리고 본격적인 노조재건 움직임과 관련된 것임이 명백하고 특히 공안청국 아래서 자행되어온 정부기관의 불법적 연행과 테러, 구속, 수배, 미행 등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인권유린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우리사회의 무법천지성을 반증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학생회 빌대식이자 전면적인 학원자주화투쟁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다. 이것은 학원측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용갑동지의 죽음에 의문점을 더하는 것이었다.

사건 직전인 3월 27일, 김용갑 동지는 전날(3월 21일) 신입생환영회에서 난동을 부린 학생 5명과 만나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있다가 밤 11시 25분경 이들과 헤어진 뒤 다음 날 새벽 2시경 좌측 다리골절, 턱부위 외상, 양사타구니 안쪽에 웅혈, 왼쪽 정강이 부위에 놀린 자욱 등의 외상이 있는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후 문종석이라는 자가 범인이라고 자수해왔으나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2. 의문사함

1) 사고차량 행적의 의문점 및 범인이라고 자수한 문종석의 경위설명 중 의문점

· 경찰에서 범인이라고 밝힌 문종석은 사건 이를 후에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했으나, 대책위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노름빚을 갚아준다는 재단측의 약속을 받고 자수했다 함.

· 문종석은 사고 당시 김용갑 동지와 부딪히면서 앞유리창과 백밀러가 파손되었다고 했으나 차체가 망치나 돌멩이로 인위적인 파손을 가한 흔적이 있음을 밝혀내자 사고 후 마산 누님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앞유리와 백밀러로 교체한 후 자수하기 직전 원상태로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망치를 이용해 파손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앞유리가 깨져 혼자 교체했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혼자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

· 문종석은 사건 당시 동승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 목격자들은 승용차안에 3.4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 문종석은 당시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고 “끼익”하는 경적음도 없었다.

· 문종석은 사고 후 차량을 속초시 교동 소재 로얄아파트 앞에 주차시켰다고 하는데 당시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사고차량은 르망 신형승용차로서 보통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손이 일어나는데 사고차량은 70킬로그램 이상되는 성인과 부딪쳤는데도 이렇다할 파손 혼적이 없었다.

■ 김용갑 (24세)

1989년	속초 동우전문대 학교 입학
1990년	동우전문대 학교 총학생회장 당선 학원자주화 투쟁 전개
1990년 3월 28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 경위

속초 동우전문대는 재단측이 폭력배를 ‘구학대’로 조직하여 학원내 민주적 요구사항을 폭력으로 압살하는 반민주적 학원풍토를 조성, 심지어 학생과 직원들은 재단의 지시대로 학원내에서 공공연히 폭력을 구사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일삼아 왔다.

김용갑 동지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학원내 비리를 척결하고 학원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재단측에 의해 고용된 폭력배들에게 수시로 협박과 구타를 당하고 회장 사퇴를 강요당해왔다. 또한 학생과 직원인 김진(33세)으로부터 “나를 배신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차로 갈아서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차로 받아 죽여도 과실치사로 6개월 밖에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남을 시켜서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학생들은 우연히 이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한다) 3월 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설악 유스호스텔에서 방에 감금된 채 집단폭행까지 당했다. 사건 며칠전부터는 학교측의 갖은 협박과 폭력때문에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칼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90년 3월 28일은 바로 동우전문대 최초로 세워진 자주총

· 문종석은 사건 당시 전방 20미터의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들은 당시 문종석이 추월하려던 차량은 없었다고 한다.

2) 사고현장 및 시신의 의문점

· 시신의 상태가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차렷상태로 있다 는 점(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턱뼈가 으스러지는 등 고통이 심했을 텐데도 시신은 아무런 고통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반듯이 있을 수 있는가)

· 범퍼로 받아 부러졌다는 주장에 비해 부러진 죄측 다리 부분은 범퍼의 높이보다 약 10센티 높았다.

· 구두가 모두 벗겨져 각기 시신을 중심으로 우측 신발은 시신의 후방 32m지점의 숲속에서 발견되었고, 좌측 신발은 전방 30m 지점에서 발견 되었다.

· 시신에 신겨진 양말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이것은 누군가 시신을 잡아서 끌어올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 턱부위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한방울의 피도 흘려 있지 않았다.

· 와이셔츠에는 두 줄기로 찢겨진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겨진 듯 예리하게 찢겨져 있었다.

· 와이셔츠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으나 함께 입고 있던 점퍼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 문종석은 고속으로 달리다가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현장에는 급브레이크시 나타나는 스위즈마크(타이어 자국)가 나타나지 않았다.

3) 2시간 35분의 공백

문종석은 당시 사고시각을 새벽 2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용감 동지가 폭력배 5인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11시 25분에서 그 시각까지 약 2시간 35분의 공백이 남는다. 동지가 동행인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는 속초시 노학동소재 마니또분식점 앞이었으며 그곳에서 사고현장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불과 20여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지는 그 2시간 15분여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4) 한번도 가지 않던, 더구나 가로등조차 없는 음습한 도로변으로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지는 평소 동지가 알고 있는 2군데의 지름길로 집을 다녔다. 더군다나 사고 현장의 길은 가로등조차 없는 외진 길이라 밤이 되면 그 누구도 그 길로 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상당히 위험한 기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동지가 마니또분식점 근처 노학동에 있는 친구집에 들리지 않은 채 늦은 밤 그 길을 통해 집에 가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친구는 집에 있었다 한다.

이런 사실을 볼때 경찰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애를 쓰고 있음이 드러나고, 타살한 이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그곳에 옮겨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 이덕인 (28세)

1967년 12월	전남 신안군 출생
1995년 6월	아암도에서 노점 시작
1995년 11월 25일	노점 철거에 반대 농성중 실종
1995년 11월 28일	아암도 해변가에서 시신으로 발견

1. 사건경위

4급 장애인이라는 힘겨운 신체 조건하에서도 노점생활로 기반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려고 성실히 살아가던 이덕인씨는 현정권과 인천시 당국의 대책없는 노점철거에 항거하여 투쟁하다 급기야 그들로부터 살해되었다.

이덕인씨는 인천시가 휴식공간 목적으로 군사보호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95년 7월 3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장애인 22명, 빈민 20명과 함께 노점을 시작했다.

그 뒤 연수구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점 철거를 지시하고 시의회 철거비 예산으로 2억2천만원이 확정되는 등 노점상들의 생계가 위협당하자 철거 감시용으로 철탑망루를 설치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24일 경찰병력과 용역깡패 1,500여명이 포크레인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하자 이덕인씨 등 노점상들은 비상대책위를 열고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로 시청밖으로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실신했다. 이어 아암도 진입투쟁을 벌였으며 일부는 진입에 성공하고 일부는 연행되었으며 경찰은 소방차를 동원해 망루에 물을 뿌리고 내려올 것을 강요했다. 망루에는 총 28명이 잔류농성을 벌였다.

25일, 협상단 7인이 시의회 신맹순 의장 면담, 아암도 노점상의 요구사항을 이해시키고 중재와 아암도 망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중재를 약속받았으며 인천연합 민생민권위원회 정한식 목사님이 아암도를 방문, 중재를 하기 위해 망루노점상들과 만남을 요구했으나 남부경찰서에서 거부했다. 몇시간 후 아암도진입투쟁에 성공해 망루 15미터까지 접근하여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를 했다. 7시 30분경, 이덕인씨와 이석근씨가 망루에서 내려와 탈출을 시도하다 이덕인씨만 내려왔다.

11월 28일 탈진환자 몇 명이 내려오고 망루에서 11명이 농성하고 있던 중 이석근씨가 바닷가에서 최초로 시체를 발견, 웃차림과 턱수염을 보고 이덕인씨로 추측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김선모씨, 이석근씨가 시체를 이덕인씨로 확인했다. 시신 발견시 빗줄로 손이 앞으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양쪽 팔과 얼굴부위에 상처로 간주된 피멍이 들어 있었다.

이덕인씨의 사체를 인천 소재 세광병원에서 길병원으로 옮기고 인천지역 재야단체 비상연설회의에서 이덕인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경찰이 인천 길병원에 2,000명 정도를 투입해 사체를 탈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가족중 형 이덕찬씨를 연행한 다음 부검동의와 입회를 요구하며 경찰이 심한 구타를 했으며 가족들의 부검 동의없이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부검 과정에서 재부검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체를 훼손시켜버렸다. 이로 인하여 유족측은 경찰이 가혹행위 치사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의심, 더구나 이사고에 관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의혹을 낳았다.

2. 의문점

이덕인씨의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문에 대한 증거로는

1) 사체발견 당시 빗줄이 다소 풀어지기는 했으나 두손이 포박된 상태로 묶여져 있었던 점.

2) 최초 발견시 시체에 타박상으로 보이는 눈위의 열상(찢겨진 상처) 및 얼굴 부위와 어깨등의 좌상(피멍든 상처)이 존재했던 점.

3) 이덕인씨가 옷을 입은 상태(이석근씨의 진술에 의하면 야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함)로 물에 들어 갔는데도 사체발견시에는 상의가 벗겨진 상태였다는 사실 등이 있다.

이덕인씨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민중과 빈민들,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삶이 어찌되건 자신의 권리유지에만 굽굽해하며 그들의 생계마저 포크레인으로 가차없이 짓뭉개는 김영삼정권의 반민중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인천시당국이 노점상들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더구나 망루로 피신한 노점상들에게 물과 음식을 차단시키고 굽기야 탈진한 노점상들을 향하여 추운 겨울의 강한 바닷바람에 얼어 죽도록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켜 결국은 이덕인씨를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것은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인 것이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시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문영수 (29세)

1953년 11월 10일	출생
1982년 8월 19일	경찰에 연행, 구타와 폭행을 당함
1982년 8월 22일	광주 적십자 병원에서 문영수 행려병 환자로 위장된 채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됨.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김광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문영수를 검거하여 역전파출소로 연행했다. 김광호는 피를 흘리며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연행될 당시 아무런 부상도 없었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행 다음날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순찰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를 발견하여 광주 유동 소재 조세현 외과에서 응급조치를 시킨 후 광주 적십자 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 입원시켰으나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인 행려병 환자로 취급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로 넘겨지고 몇개월간 보관되다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

1. 고소장

- 1) 고소인 : 춘천시 죽림동 11의 56호 7동 2반 문덕수
- 2) 피해자 : 문영수 (1982. 8. 22. 광주적십자 병원에서 사망)
- 3) 피고소인:
 - 최판석 (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현: 서부서 형사계 근무)
 - 임용남 (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현: 서부서 월산동 파출소 근무)

· 최병용 (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미국이민중이나 현 국내 거주)

· 문규조 (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서부서 형사계 근무)

· 나택곤 (사건당시: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순경, 현: 서부서 조사계 근무)

· 김성열 (광주시 북구청 복지과 복지계장)

· 양종호 (광주시 북구청 복지과 복지계원)

· 윤재룡 (전남의대 해부학교실 해부학 교수)

· 사체해부 당시 전남의대학장

상기 피고소인들의 피해자 문영수에 대한 사체유기, 사체부검방해, 사체실습사용, 공문서위조, 지휘감독소홀, 은폐조작행위 등 위법행위혐의에 대하여 관계 경찰관 등을 고소하오니 이를 엄중히 수사하여 의법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고소사실

1) 1982년 8월 19일 저녁 9시경 광주시 중흥동 소재 덕천여인숙에서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가 피해자인 김광호와 술을 함께 마시다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사건현장에서 검거되어 역전파출소로 연행되어 피해자 김광호는 피를 흘려 효성병원으로 후송되고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는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었다고 함. 피해자 문영수는 사건현장에서 연행당시와 역전파출소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 김광호 증언에 의하면 문영수는 아무런 부상도 없었다고 하며 건강상태는 매우 좋았다고 증언함.

2) 가해자 문영수는 연행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9시경 전날밤(82. 8. 19.) 사건담당형사 최병용의 경찰관 1명에 의해 순찰중 광주시 소재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되었다고 거짓 증언하여 광주시 유동소재 조세현외과에서 응급조치 후 광주적십자 병원에 행려환자로 허위입원시켜 치료하던중 1982년 8월 22일 오후 6시경 사망하였다고 함.

3) 가해자인 사망자 문영수의 사체는 본적, 주소 일체불상으로 경찰관에 의해 허위조작되어 1982년 8월 23일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사체를 인계하고 사체를 인계하고 사체를 인계 받은 전남의대 해부학교실은 그후 몇개월간 보관하다가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함은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돌아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겼고 이러한 피고소인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피고소인별 혐의내용

1) 피고인 최판석, 임용남은 역전파출소에 근무하던중 이의 전화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 문영수와 피해자 김광호를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하였음에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가해자인 문영수는 사건현장에 도착하니 도주하여 문영수를 체포치 못하고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후 9시경 사건현장인 덕천여인숙에서 체포하였다고 거짓증언함은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위한 행위.

2) 피고인 최병용, 문규조는 서부경찰서 형사계 근무하던중 1982년 8월 19일 밤 문영수를 역전파출소로부터 인계받아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982년 8월 20일

오전 문영수를 광주적십자병원에 순찰중 중흥동 노상에서 신음중인 환자로 발견된 행려환자하고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허위입원 시켰음.

3) 사건책임자 나택곤은 광주서부경찰서에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연행된 문영수가 조서를 받았던 담당형사들에 의해 광주적십자병원에 행려환자로 호위 입원되어 사망하였음에도 사체부검실시도 하지 않고 전남의대 해부학교실로 보내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상급책임자로서 상기피고인들에 대한 자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함.

4) 김성렬, 양종호는 문영수의 사체를 북구청장 등으로부터 가매장 사체처리 지시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고, 사체가 전남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않고 임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유가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죄를 범했음으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함.

5) 전남의대 해부학 교수 윤재룡(담당교수), 사건당시 전남의대학장은 문영수 사체해부신습 전에 관계기관에 사체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자 및 유가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체를 정당하게 관계기관에 인도 교부받아 학생실습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이해치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체를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하였다함은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돌아킬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겼고 이는 인간이하의 행동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함.

*참고: 문영수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을 못취했다 하면서 사망자 문영수의 전과기록부에는 1982년 8월 19일 폭행사건의 죄인으로 상세히 기록해 놓았고 적십자 병원 입원 기록카드에도 본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피해자도 김광수도 '연행당시 몸에 아무 이상도 없었고 문영수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치료비도 받게 해달라는 부탁도 무시했다'는 사실을 증언함.

1987년 9월 12일 고소인 문 덕수
광주지방 검찰청장님 귀중

■ 김상원 (33세)

1957년 5월 7일	출생
1986년 3월 10일	영등포에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다가 연행됨.
5월 26일	식물인간으로 투병생활 중 운명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유죄가 인정됨.
1990년 12월	

김상원은 1986년 3월 10일 저녁 영등포 우체국 앞에서 검문에 항변했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직할 중앙파출소에 끌려갔다. 경찰들의 무차별 구타로 앞이빨 6대가 부러지고 두부 좌측 피하혈종에 비강내출혈, 좌측 안검부종에 뇌挫상 등 온몸을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식물인간이 된 채 영등포 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에 의해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려환자로 위장, 입원되어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의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은폐아래 중환자실에서 77일간을 신음하다 5월 26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다.

1986년 3월 10일(근로자의 날) 낮 12시경 건강한 몸으로 영등포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소식이 없자 가족들은 폭행을 당했던 영등포경찰서 및 중앙파출소를 두번씩이나 찾아갔다. 가족들은 무연고자 사건 사고 문의를 했으나 경찰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시 치안본부 교통종합상황실 및 각 경찰서 182번 가출신고센타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 응급실 및 영안실을 뒤지던 끝에 86년 4월 14일 사건발생 34일 만에 영등포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김상원을 발견했다. 병원측은 기관지를 절개하여 기도에 호스를 연결시켜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가족들이 입원하게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영등포 경찰서 177호 백차 운전자인 홍성일 순경에 의해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홍순경을 찾아갔으나 3월 10일 밤 10시 25분경 중앙파출소에서 강성용 순경에게 인수받아 병원에 후송시킨 것 밖에 모른다고 했다. 중앙파출소 근무일지를 확인해도 아무런 기록조차 남겨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끈질기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성과로 가족 입회아래 시경찰국 감찰계에서 4월 17일 조사를 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다.

강성용이 피해자를 파출소에 연행해 왔을 당시 상태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 한방울 발견치 못했으며 상처하나 없었다. 단지 술에 취해 있었을 뿐이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 근무일지는 언제 조작했는가? (김재룡 경위)

가족들이 34일만에 피해자를 시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찾아내어 항의하고 간 다음날 86년 4월 15일 정오경 근무일지를 뗐어내고 새로 작성해서 끼워 넣었다. (강성용 순경)

파출소장 결재는 어떻게 받았는가? (김재룡 경위)

들키지 않도록 하라며 해줬다. (강성용 순경)

홍성일이가 파출소에서 강성용에게 피해자를 인수받을 때 상처는 어떠했는가? (김재룡 경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혼수상태였다. 얼굴과 웃이 온통 피투성이로 시트를 적설까봐 신문지를 깔고 후송했다. (홍성일 순경)

이상과 같은 대답이 나오자 관련 경찰관들이 공문서 위조 및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축소하여 사건을 덮으려다 새로운 사실이 제137차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김정길 의원에 의해 폭로 되어 재조사 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체 조사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관련자 처벌도 없이 시경국장까지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시 가족들은 사건당일 파출소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를 찾아 나서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중앙파출소에 있었던 3명의 목격자들을 찾았다. 그 결과 집단 구타와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86년 3월 10일 저녁 9시 40분경 이병호 경장에 의해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던 중 마찰이 있었고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구타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목격자들이 파출소를 나오던 밤 11시 20분까지 피해자는 멀쩡했으며 그때까지도 다툼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후 관련 경찰관들은 보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방범대 기실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면서 때렸다. 그런데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어 절명직전에 이르자 우연하게도 같은 시각 영등포동2가 명동장 여관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정영수를 김상원과 뒤바꿔 놓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연행되지 않은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밝혀지자 모든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서로 은폐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뒤 가족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1987년 7월 23일

(사건번호 42982호)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심증은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냈다.

더우기 관련 경찰관들을 조사한 증빙서류 속에서도 경찰관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에서 경찰관들은 여러차례 대책 회의를 열어가며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 졌지만 불기소 처분한 경찰주사반 소견서에 입을 맞추며 은폐조작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전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반대로 사건현장을 생생히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었다.

이후 그의 가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경찰에 맞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농성, 진정, 법정투쟁으로 5년여만에 법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행사실을 밝혀내고 민사에서도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의문의 죽음이 최초로 해결된 경우로 기록될 것이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군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허원근 (22세)

1962년 5월 15일	전남 진도 출생
1981년	부산 수산대학교 입학
1983년	군 입대
1984년 4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머리 양가슴에 삼각형의 총상 >

1. 사건경위

19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제7사단 3연대 1대대 3 중대 본부에서 30m 떨어진 폐유류고 위장대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허원근군(당시 22세, 부산수산대 2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허원병은 중대장 당번병으로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허군의 사망시각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부대측에서는 자살이라고 단정지었다. 총상은 M16에 의해 흉부 좌우측에 2발, 두부에 1발 나간 것으로 판명되었다. 군당국이 발표한 자살 동기는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군대 생활에 대한 염증'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문점

1) 살상력이 강한 M16 소총을 위치를 각각 바꾸어 가면서 3번이나 사망자 스스로 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우선 의심스럽다. 부대측에서는 "먼저 허군이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 오른손으로 총 윗덮개 부분을 잡고 왼손 엄지로 격발하여 총알이 간장 중앙 상단부와 횡경막 폐장 하단을 뚫고 등쪽으로 관통하였으나, 당장 자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에 총구를 밀착하고 왼손으로 총구부분을 잡은 후 오른손 엄지로 두 번째 격발을 하여 탄환이 폐장 하단을 뚫고 거드랑이 쪽으로 관통하였으나 역시 의식이 남아 마지막으로 오른쪽 옆구리가 땅에 닿는 45°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로 격발하였다"고 군의관 소견서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M16 소총을 두 발이나 몸에 쏘고 다시 머리에 정조준하고, 또 그 직전에 정조준을 위한 적절한 자세를 의식하여 취했다는 것은, 아무리 두 번의 격발이 탄환이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관통하여 치명상-즉각 사망할 정도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권총이나 단검과 같은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도구가 아닌 총구에서 방아쇠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M16을 두 번이나 맞은 후에(벗겨나간 것: 스치고 지나간 것도 아닌) 다시 머리에 대고 쏘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부대측의 자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가장 큰 논거가 밀착사격이고 현장에 방어하려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밀착사격=자살'이라는 데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경우 총구가 피부나 옷에 밀착된다면(타인에 의해) 방어할 것이나, 협박조로 들이대고 사망자가 채 피하기도 전에, 또는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상급자여서 일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격발할 수도 있다. 실제 83년 9월 20일 19:00경 중대장이 하사의 불순한 언행을 이유로 중대원들 앞에서 M16에 실탄을 장전하고 복부에 대고 위협했다는 사실은(육군 제2621 헌병대 자료에 의함) '밀착사격=자살'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3) 부대측에서는 사망자의 머리에서 바로 50cm앞에 울타리(나뭇가지로 되어 있음)가 있어서 타인이 총구를 들이댈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부대측 말대로 우측 흉부→좌측 흉부→오른쪽 두부로 격발하여 직접적 사인이 두부총상이라면 사망자는 오른쪽 눈썹위에 총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긴 후 바로 즉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M16은 총구가 오른쪽 머리쪽을 향한 채 놓여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현장 사진을 보면 총은 보이지 않는다.

4) 사망자의 상처 부위와 그에 따른 탄피, 실탄 수에 대한 군부대측의 발표는 일관성이 없다.

사망자는 3곳에 총상을 입었고, 총성은 두 번 들렸고,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2개뿐이었다.

중대장은 병기계원의 착오로 탄창에 남은 실탄이 13발이라고 잘못 발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대장의 행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장은 사망자가 탄창을 2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병기계를 시켜 사망자에게 탄창 3개를 갖다두라고 했다. 중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가 규정량의 탄창 - 규정량의 탄창은 5개 -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교육부설에 대한 추궁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를 앞에 두고 중대장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나중에 병기계원의 진술에 따르면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실탄 1발을 사망자의 곁에 살짝 묻어 두고 왔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중대장의 행위는 사건을 자

살로 몰아가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대장 말이 처음에 사망자가 2탄창을 가지고 가서 3발을 쏘고 탄창에 11발 약실에 1발 도합 12발이 남아 있는 것은 규정량 5탄창을 휴대하지 않은데 대한 교육부실추궁이 두려워 3탄창을 추가시켰고 당시 이 일을 수행했던 병기계원의 착오로 잔여탄 13발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5) 중대장이 사망시간을 10:30→11:00→13:00로 교육 시킨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후 사망시간이 9:50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근거가 멀리 철책선을 둘러보던 중대장이 희미하게 들었다는 진술과 상황일지 기록의 일치라는 것인데, 3번이나 수정 교육시킨 중대장의 이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 중대장의 '멀리서 희미하게 9시반경 총성을 들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은 100%라 하기 어렵고, 보다 중요한 것은 송기호(당시 사망자와 같은 부대의 근무자)의 진술서가 상황일지의 조작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사망 시간 9시 50분 자체가 불확실하다.

(진술서- 당일 16초소 근무중 11번 근무자로부터 총성을 보고 받고(10시반경) 중대본부 상황병에게 보고, 그 후 중대장 지시하고 홍민표가 중대본부에 내려와 상황일지 시간변경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이사실 목격자 많다고 함) 오후 5시경 감찰관이 상황일지 제출을 명령→수행)

또한 9시 50분이 조작된 것이라면 당시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것이다.

또한 헌병대 자료에 의하면 그 총성이 서방 500여 미터 떨어진 11번 근무자가 총성을 들을 정도로 그 소리가 커고 세 번이나 울렸으며, 부대측 주장인 자살이라면 각 총성이 연이어 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제조작을 위해) 그런데 현장에서 중대본부는 30m이고 남방 20m에 주차장이 있는데, 헌병대 자료에 의하면 "9시 50분경 21번 근무자가 총성청취사실을 상황병에게 보고→미발견"이란는데 이 자체가 송기호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총기사고가 무척 중요한 것인데 3발이나 크게 울리는 총성을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대본부에서 먼저 듣고 즉시(외부지시로 수색한 것이 아니라)보고하거나 수색하지 않은 점은 의심스럽다. 또한 20m 떨어진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중대장은 초소 순시중이었다고 한다. 09:50분경 21초소, 10시 50분경 18번초소로 이동중인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 시각 11번 초소 근무자가 총성을 2번 들었다. 즉, 총성과 사망시각을 변경한 것은 당시 현장에 머물렀던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부대측에서는 '중대장과의 갈등'으로 자살 동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현병대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중대장으로부터 직접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의 특수성으로 밀미암아, 비록 중대장의 당번병으로 중대장 명령으로 취침시간을 조금밖에 갖지 못했다고 하나 (중대장의 호통으로 통상 02:00경 취침하여 2시간 근무하여야 하므로 06:00 기상까지 1~2시간 취침했음) 이것이 자살 이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그동안 아무리 수면부족으로 죽고싶을 정도로 하더라도 따뜻한 음식과 편한 잠자리가 한정없이 보장되는 휴가, 그것도 입대 후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루만 더 참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3월 중순경 보직 변경 건의를 했다는 것 (중대장이 거절),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교육불성실을 이유로 상관인 상병 이진경이 폭행당한 것(중대장으로부터)으로 인한 강박감이 직접적 자살동기라고 부대측은 파악하고 있으나, 3월 중순은 사건당일로부터 15일 전이고, 당시 중대장의 이진경에 대한 폭행은 철모로 두부를 1회 구타한 것으로, 사망자를 자살로 몰고갈 정도의 심한 강박감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7) 화약검출 실험을 왜 중대장만 제외하고 실시하였는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가정하에 실시했던 부대원들의 화약검출 실험에서 왜 굳이 중대장만 제외하였는가 하는 점은, 중대장의 괴팍한 성격(모든 부대원들에게서 :현병대 자료)과 더불어, 한층 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당시에 훈련을 마치는 병사들에게는 부모와 만나는 면회를 오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만은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회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배제할 수 없는 증거이다. 입대한 지 (83.9.28입대) 6개월이 지난 사망자가, 군대라는 사회의 분위기를 알만큼은 알았을 사망자가, 폭언이나 수면부족, 상관이 자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폭행으로는 아주 경미한 구타를 당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압박감이나 삶의 회의를 느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총을 세 번이나 모질게 쏘며 죽을 정도의 압박감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그 리운 가족을 만나는 입대후 첫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의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극심했다 하더라도 자살을 했다는 추정이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중대장의 가혹행위·폭력·괴팍한 성격(모든 부대원들에게서 :현병대 자료참조) 사망자가 중대장의 당번병이었다는 것, 중대장이 총성청취교육을 수차 번복하여 시켰던 점, 화약검출실험을 중대장을 제외하고 실시했다는 점 등은 의혹스러운 부분이다.

*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할 것을 진정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함.

■ 노철승 (22세)

1965년 3월 5일	출생
1983년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1985년	군입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
1986년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 받음
1987년 3월 1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개요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 1985년 6월 26일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무선통신사 면허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로 차출되어 근무 중 상급자들로부터 기합, 구타 등으로 다리를 다쳤기에 86년 4월 19일 수도통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1986년 11월 14일 광주 병원으로 전원 치료중 1987년 2월 15일 수도방위사로 원대 복귀하여 87년 3월 1일 8시 50분에

특정지역(청와대 뒷산) 삼일초소 남방 405미터 지점에서 총탄 2발을 머리에 맞고 사망하였다고 함.

2. 의문점

1) 노철승의 형 노찬승이 조선대학교 철학과 4년 재학중 1985. 5. 10. 군에 입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법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어서 노철승군은 신원이 부적합한데 특수부대내에서 근무하면서 형과 내통(편지를 수사기관에서 보관증임)한다고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1987년 원대 복귀 시 집에서 약 5만원의 돈을 소지하고 바로 특정지역에 배치되었는데 유품에 돈이 전혀 없었음. 사체부검시 하체에 모세혈관 파열상이 심함. 사망 후 유서가 발견되지 않고 제대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아 자살할 이유가 없고, 1987년 3월 1일 6시 30분~8시 30분 사이 초소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 정태영을 1987년 3월 25일 면담하여 죽은 경위를 물어보니 "뒤에서 총소리가 나서 죽은 것으로 알았다"고 했으며, 그러면 죽은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물으니 안 가보았다고 하였고, 육군 제 8010부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고 의문점이 많아 동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의 행적을 알기 위해 내무반 동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소관이 아니라고 거절하였음.

2) 사체처리 등의 요청서에 의하면 총탄 두발을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2 자동소총으로 총알 두발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두발 나간 점도 의심스러우며, 총탄 삽입구가 이미이고 총알이 나간 곳은 뒷목 부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총을 들고 즉 위로 들고 쏘았다는,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자세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이승삼 (22세)

1966년	부산 출생
1986년 3월	부산전문대학교 전기과 입학
1986년 12월 16일	논산훈련소 입소
1987년 2월 2일	36사단 공병대에 배속
1987년 3월 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개요

이승삼군은 1986년 12월 16일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1987년 2월 2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 공병대에 배치되었다.

부대배치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2월 16일 잠깐 면회를 하였고, 다시 3월 1일에는 외박을 허락받아 같이 밤을 보냈다. 그런데 헤어진지 이틀후인 3월 3일 저녁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승삼군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현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3월 3일 오후 4시 30분경 부대 찬류병 2명과 저녁 5시에 하기식을 해야 하는데 이승삼군이 보이지 않아 다른 사병의 협조로 하기식을 마치고 이승삼군을 찾았더니 문이 잠겨있던 중대장실에서 그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발견 당시에 중대장실에는 이승삼군이 난로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젖히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머리와 바닥에는 피가 흔적을 남겼고 이미 죽은 상태였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현병대는 이승삼군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이승삼군의 목주반지가 난로위에 있었고, 담배꽁초 3개가 있었으며, 총은 난로 옆에 놓여 있었고, 반항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승삼군의 아버지 이두형씨는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강박감이나 감당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살로 단정한 현병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현병대는 애인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침 구보시 동료의 부축을 받은 것이 심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총알에 대해서는 2월 23일 주간 사건과 야간 사격시 실탄을 숨겨 가지고 있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두형씨는 탄피가 한 개라도 없어지면 부대

원 전원이 동원되어 그것을 찾아내곤 하는 부대관행을 알고 있었고, 현병대가 말하는 자살 동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두형씨는 말단 수사관의 수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현병감, 여야당수 등에게 계속하여 탄원서를 보냈다. 답장이 오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다시 보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몇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다.

특히 이승삼군이 부대생활에서 선배 사병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돈을 빌려달라기도 하고 매점에서 무엇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삼군이 죽던 3월 3일에는 종일 밥도 주지않고 세탁하라, 총기 반납하라고 괴롭혔으며 초소 근무도 4시간이나 시켰다. 특히 최규권 일병은 이승삼군에게 군기를 암기하지 못한다고 기합을 주었으며 안면을 구타하여 안경알이 박살나고 안경 유리가 눈알에 박혔으며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승삼군이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이두형씨는 계속하여 탄원서를 발송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두형씨가 여전히 자살시킬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살동기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눈에 안경알이 깨어져 박혀 있고 앞니가 4개나 부러진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도 의무실에 가지 않고 중대장실에 혼자 찾아가 따뜻한 난로옆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기지개를 펴듯 사지를 펴고 죽는 것이 일반적이고, 앉아서 죽는 것은 극소수 수도승이나 동사자 등에서나 발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승삼군의 마지막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눈에는 안경알이 깨어져 박혀있고 앞니가 4개나 부러져 나간 사람이 실탄을 사격장에서 주워다가 자기목에 쏘았다면 폭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총은 난로 옆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승삼군은 M16 소총으로 자기 목에 두발을 쏜 뒤 총을 난로 옆에 세워두고 난로가에 앉아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외 사격장에서 실탄을 몰래 주워두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이승삼군은 누군가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의 타살이 자살로 조작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 박필호 (21세)

1966년	부산 출생
1986년	부산대학교 의대 입학
1987년 1월 30일	군입대
1987년 3월 19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개요

박필호군은 1987년 3월 11일 육군 제26사단 의무근무대에 배치받았으며 동년 3월 19일 아침 6시 20분경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사체는 목부위에서 사상형(대각선)으로 뚜렷한 색흔이 나타나 있고, 목 뒤 정중앙에 매듭자국의 색흔이 뚜렷하며 입을 약간 벌린 상태였고 좌우측 정강이 부분에 3cm가량의 찰과흔이 있었으며 등허리 부분에도 직경 1cm정도의 찰과흔이 있었다. 사체가 처음 발견된 화장실 4번체 변기칸 천정에는 판쵸우의 끈으로 보이는 줄이 천정보에 끊어져 늘어져 있었는데 지면에서 약 1.5m지점에까지 늘어져 불에 의해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한편 같은 날 아침 8시 15분에 전화연락을 받은 박필호의 부모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부대에 도착하여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검을 거부한 부모들은 화장에 동의하였다. 그때 나름대로 각처에 알아 보았지만 시체부검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당시 육군본부에서 부검을 하려 웃지만 믿을 수 없고 부검을 하지 않아도 겉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죽은 사람의 시체에 하얗게 딱지가 말라 붙었으며, 그 당시에는 군에 벽이 높아 원수를 갚지 못하고 23년간 키운 자식 개죽음 당하고도 가만

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말단직 공무원이라 말을 잘못 하면 신상에 영향이 미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남은 두 자식과 가족이 살아갈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화장을 해 버리고 말았다.

2차 조사 때 조사관이 하는 말이 “1년에 400명 가량 자살로 죽기에 국가 재정상 보상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차후에 생각해보니 아들의 죽음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각계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군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하얗게 말라 붙어 있었다.

5) 모든 사고는 현장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조사자나 보호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06시에 사고가 났고 당일 오후 4시에 도착했는데 현장보존은 커녕 옷을 모두 벗겨 목욕을 시킨 후 알콜처리까지 끝낸 후였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현장보존을 하지 않았으며 알콜처리하면 피멍이 사라진다는데 왜 알콜처리를 했느냐는 것이다. 분명 구타후 사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를 한 것이다.

6) 집에서 연락받은 것은 8시 15분이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부대장은 8시 30분에 출근한다고 한다. 그러면 8시 15분에 부산집으로 연락이 가능하나는 것이 의문이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윗상관에게 보고가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주소 및 시신을 찾느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집으로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이는 필시 사망자가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증거이다.

7) 사망자가 적응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집에 부쳤다고 하는데 결봉에 쓰여진 부대 주소가 다른 이의 필적이다. 1987년 3월 17일 정확한 시간은 오전 11:00 시경 편지가 왔는데 “가족사진 한장과 부대에서 적응이 힘들다” 부치라는 필적과 부대주소가 평인의 필적이 아니며 16일 부친 편지가 속달도 아니고 17일날 도착했으며 경기도 양주군이면 최소한 3,4일, 늦으면 4,5일 걸린다. 즉 사망자가 편지를 부치려고 갖고 있었는데 주소를 모르고 있을 때 사망했다는 것이다. 더더욱 주소를 몰라 그냥 부쳤다면 행정실에서 일괄처리할 때 결봉의 주소도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주소를 쓴 필체와 결봉의 필체가 다르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망자의 편지를 보관해 두었는데 사망자가 죽자 이를 은폐시키려고 집으로 보내기 위해 결봉 주소를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고 그곳 사병들에게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물어보니까 저마다 다르다는 의문점이 있다.

■ 박상구 (20세)

1967년 7월 6일 경남 울산 출생
1986년 대구 공업고등학교 졸업
하사관 입대
1987년 5월 11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부모님의 호소문

1) 1987년 5월 11일 사망 전보를 받고 부대에 도착한 시간이 16시경이었습니다.

도착 즉시 아이를 보고자 하니 이어 저러한 평계를 대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같아서 “빨리 아이를 보자”고 독촉하니, 식당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를 마치 자기의 부하처럼 호령을 하며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길래, “왜 농약을 먹었느냐”고 하니까, 병원에 있는 다른 군인이 ‘집이 기난하여 공부를 많이 못했다’며 비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런 성격의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집안으로 밀어넣은 그때, 시체를 싣고 나가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내 이들인지를 확인하고 했지만, 차가 없어서 못 간다면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가 몇대씩이나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것들은 차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지만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천천히 달리길래 “빨리 가자”고 독촉을 해도 중대장이 박하사 칭찬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 고등학교도 군대 생활하면서 통신으로 졸업을 했으며, 지금 군생활이 17년째이고 여기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2) 병원에 도착하여 영안실에 갔더니 영안실 열쇠가 없다는 말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영안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체를 보니, 오른쪽 귀부분과 얼굴, 몸은 깨끗한데 왼쪽 귀부위와 목, 어깨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은 아이가 어째 몸이 이렇게 깨끗하며, 목 부위

에 멍이 들어 있느냐” 하니, 약물이 목에 흘러서 그렇다고 하기에 “농약을 먹으면 몸 전체에 푸른 반점이 있는데, 목 부분만 변색이 되는가”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 또, 귀와 코구멍에서 피가 나와 있기에 “피가 왜 나왔나” 하니 호스를 넣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코와 귀에 왜 호스를 넣어 피가 나오도록 무엇을 하였나” 하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깨에 7-8센티미터의 칼자국이 있어서 나의 엄지 손가락을 넣었더니, 손목 가까이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팔에도 같은 칼자국이 있어서 “웬 칼자국이냐”고 물으니, “헬관이 잘 안 나와서 주사를 놓으려고 그랬다”고 파견대장인 엄홍만(제37사단 현병대 군사법원 현병)이 답변하였습니다.

4) 목을 졸린 흔적이 있는데, 식도 부위에 엄지 손가락이 아주 찍힌 자국이 세赜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은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 “약을 먹고 답답하니 쥐어 뜯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손으로 쥐어 뜯으면 밑으로 긁어 놓지, 이것은 목을 졸리면서 찍은 엄지 손톱자국이다”라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환과 항문쪽으로도 피멍이 들어 있고, 귀에도 두 줄기의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파견대장이 하는 말이, “고환에도 이상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조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왜 약 먹은 사람이 고환이 이상하며, 왜 고환을 조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발로 찾기 때문에 이상이 있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5) 시체 부검을 하자고 하니,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파견대장이 말하기에, 이 병원에서 음독 자살이라고 사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딴 곳으로는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빨리 화장을 해야 한다고 부대장이 주장하기에 우리는 군법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이 죽고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화장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을 먹었으면 온 몸에 푸른 반점이 생긴 다는데 몸과 얼굴은 깨끗하였고 목과 어깨만 진한 잉크색으

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을 입힐 때에도 부모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6) 꾸중한 선임하사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없다고 하기에 계속 만나기를 욕구하였고 나중에 선임하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꾸중을 했기에, 농약을 마시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가” 했더니 선임하사는 “심하게 꾸중도 하지 않았고, 늦게 왔기에 왜 늦었나, 가서 자라고 한 것 밖에 없다. 그런 일로 자살한다면 이 부대에 군인이 남아 있을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선임하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부대장이 뒤에서 “잘못됐다고만 하면 된다”며 소리를 지르니 선임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선임하사의 다음 말을 막으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중대장과 탄약 검사원이 “병원비도 6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금을 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며 이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판 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10시간도 안 되어서 60만원이 넘는다면, 또 하루를 더 있으면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8) 파견대장이 보호자 도장을 달라기에 상구의 형에게 주었더니, 형을 데리고 가서 회장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황증에 있는 부모에게서 도장을 받아서 자기네 일만 처리해서 자신들만의 안전만 도모한 처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나라에 바치려고 하던 아이였으니,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9) 파견대장이 거절하고 딴 곳에 못 가지고 간다기에, 군인니까 그런 줄만 알고 하자는 대로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 우리들 마음에 의문이 가시지 않아 음성 순천향병원 담당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정말로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더니, 한참만에 “먹었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약을 먹었으면 냄새가 날텐데, 냄새가 나더냐”고 물으니, 먼 산만 바라보다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기에 “농약 냄새

가 나는 것 같다니 무슨 말이냐, 나면 나고 안나면 아나은 것이지, 나는 것 같다니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칼자국은 어떻게 된 것인가”고 하니까 “칼자국은 무슨 칼자국이냐”고 화를 내면서, 경비원을 불러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관 주사를 놓으려고 끊었다고 파견대장이 말하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시, “어디를 끊었느냐”고 물었더니 의사은 팔꿈치를 가리키면서 거기를 2-3센치 끊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인한 상처는 팔꿈치가 아닌 오른쪽 어깨의 앞쪽이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상처가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곳에는 상처가 없다”고 하면서 화를 냈는데, 사실 다리에도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의사은 시체를 보지도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가 사실로 시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였다면 상처난 부위가 어디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중대장은 손목을 끊었다고 하고, 파견대장은 여기 어딘가 끊은 것 같아 팔목을 가리켰습니다.

의사에게 환자치료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경비원을 불러서 우리들은 개처럼 끌려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을 불러서 결국엔 경찰서에까지 갔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패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여자 둘이서 조곤조곤 묻고 있음을 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담당의사가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약을 먹고 치료하다가 죽었다면,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줄 것이지 행패를 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1) 또, 중대장이 죽은 아이와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주사를 놓기 위해 끊었다는데 끊은 부위가 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한 의사도 어디를 끊었는지도 모르고, 같이 있었다는 중대장도 상처 부위를 모르니 이 사람들은 현장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12) 약을 먹었다는 창고에 가 보니,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파견대장이 하는 말이, 진열대 상단에 있는 약을 마시고 세제 칸에 뚜껑과 병을 다시 나란히 넣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격한 중에 약을 먹을 정도에서, 어떻게 약을 먹고

약병과 뚜껑을 세제 칸에 다시 가지런히 놓아둘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미치겠습니다.

제차 가서 파견대장에게 물어보니, 파견대장이 저만 쳐다보며 아무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자살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3) 파견대장이, 유서가 있다기에 보자고 하니까, 유서를 보기 전에 박하사가 교회에 다녔다면서요, 주님께 먼저 간다고 속삭이듯이 말하면서 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유서는 조그만 군인수첩에 쓰고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글씨가 같다"고 혼자말을 하면서 "이 유서가 어머니는 필요 없지"하면서 자기가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서 내용을 보면, '부대장님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선임하사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서의 내용에 대해 의심이 갑니다. 기독교인은, 자살을 하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결코 자살을 할 리가 없고 설사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유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으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엄마더러 기도해 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기에 자살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14) 그 후, 제차 부대에 가서 중대장에게 유서와 일기장을 달라고 하니까 파견대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파견대장에게 유서와 일기장을 달라고 하니 서랍을 뒤적이다가 사병들에게 박하사 유서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병들이 찾다가 없다고 하니까, 벼렸는가 보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보관한다고 하고는 벼렸냐"고 따지니까 벼려도 좋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기장도 달라고 하니, 일기장은 그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서를 볼 때 당신이 일기장하고 대조를 하면서 글씨체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제서야 "유서는 상부에 보고할 때 서류에 첨부해서 보냈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조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군에서 아래로 되느냐"고 하니, "어머니, 무엇을 원합니

까?"라고 묻기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실을 밝히려고 왔다, 이제 보니 자살이 아니라는 확신이 간다"고 하니, 자신도 집사라고 하였습니다.

15) 중대장은 병원비가 60여만원이라고 하고, 부대장은 100여만원을 병원비로 주었는데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부하들의 지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이고,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부대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생각은 조금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많은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돈 몇푼을 병원비로 지불한 것은 중요하고, 남의 귀한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 와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부대장의 책임입니까? 그 자신도 자식이 있겠거늘 어찌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지 군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부대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또 큰 불상사가 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6) 또, 약 먹은 시간이 그들 말로는 20시 3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임하사가 15분 늦게 귀대하여 꾸중을 했다고 했는데, 30분에 약을 먹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21시 30분이라는 기록이 병원 임상기록에 있습니다. 몇일 후에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해 달래려고, 이름을 '박상구'라고 하니, 업무를 보던 아가씨가 "잠시 영안실에 두었다가 나간 군인이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구인 신명재 하사에게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고 죽었다고 하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니 아무말도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이 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7) 약을 먹은 사람이 목에 목을 졸린 흔적이 있고, 어깨와 팔에 칼자국이 있으며, 귀와 코에서 왜 피가 흘러나왔으며, 고환은 왜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였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그 아들이 죽은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기에 경황이 없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들을 화장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이 어찌 몸바쳐 충성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찌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한맺힌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사건 기록에서 보는 위증자료

1)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박상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고 부대 병원에 이송한 사람이 있고 순천향 병원에서 아들의 사체를 보았는데 현장약도와 현장사진, 검안 사전이 모두가 부대 내의 건물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부대 내에 두고 사진 찍고 검안하고 부모가 부대에 도착 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병원에 입원 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치료하였다면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음 하는 것을 업고 갔다는 진술서 또한 거짓이다.

2) 그때 순천향 간호사의 말이(잠시 영안실에 두었다 나간 군인) 무었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무슨 조치를 했다는 말은 모두 허위인 것이다.

3)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 처음 어머님이 보신 내용과 현 병대에서 첨부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인은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느냐 하는 항의를 했는데 5공특위 때 나온 사건 기록에는 천국에 먼저 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서라고 하는 것 또한 조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 사체검안 시 조작된 부분이다. 몸의 여러 곳에 칼자국이 있었는데 오른쪽 목부분의 상처가 가장 컸었는데 사체 검안 하는 자들이 흰천으로 가려 놓고 사진을 찍었다면 삼척동

자에게 물어 보아도 용납할수 있는 사항이겠는가? 하는 점이고, 다리와 허벅지에 칼자국이 모두 반창고로 봉해져 있었다면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5) 모든 사건이 증거품이 보관되며 소지품 또한 보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아들의 보관된 피복을 볼 수 있게만 된다면 사건은 명명백백해 질걸로 믿습니다. 꼭 죽음 당시 피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 바랍니다.

6) 죽기 전에 부대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고 하였는데 사건은 병원이 아닌 부대내의 시설물이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이동 (21세)

1966년 4월	전남 광주 출생
1985년 3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입학
1987년 1월	학생운동에 헌신
1987년 6월 15일	휴학, 입대
	총격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커... >

1. 사고경위 (군당국의 발표내용)

사고자 이이동은 군입대전 모친과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부친이 재혼하여 대전에서 딸살림을 차려 이복동생을 얻고 딸자식을 돌보지 않음을 비판해오다 군복무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살키로 결심(추정.)

1987. 6. 15. 09:00 - 10:30까지 소속대 연병장에서 5분대 기초 요원 11명에 포함되어 교육을 마친후. 동일 10:35경 비복장 차림으로 내무반 출입구 앞에서 대공초소 근무를 마치고 온 동료 이병 이인택(21)과 담배를 나누어 피우다가 자기

는 시계가 필요 없다며 이인택에게 던져주는 것을 이인택이 군에서는 별로 시계가 필요 없다라며 돌려주자 다시 받아차고 동일 10:50경 영내 중대 피엑스에 가서 짹색이 1개를 사서 먹고 자신의 지금총기(엠16소총, 115372)를 휴대하고 단독 군장 차림으로 중대막사로부터 서북방 약 500미터 떨어진 뒷 산 3부 능선에 도착. 사고 총기를 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폐탄박스(높이 40센티)위에 올려놓고 일자 미상경 자신이 미군사격장(소속대로부터 서북방 1킬로미터 위치)에서 습득 소지한 미군 엠16 실탄(W.C.C.)1발을 장전.

총구를 우측두부에 밀착하여 격발 발사됨으로써(사입구 직경 3센티, 길이 5,712센티, 사출구 직경 4센티) 두부 관통 총창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가족이 발로 뛰어다니며 알아낸 사고경위

위에서 밝힌 군수사당국의 사고경위에 따르면 이이동은 불행한 가정환경을 비판, 자살기로 마음먹었다 하나 이는 얼 토당토 않는 일이다. 그것은 첫째로, 이이동 동지는 설혹 가정환경이 불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비판하고 혐오하는 젊은 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인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이동의 대학 친구들의 진술과 그의 편지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둘째로, 이이동 동지가 가정환경을 비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환경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을 마음먹으려면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계기가 없다. 이는 사고 전 마지막 접견 때 보여준 이이동 동지의 활기찬 모습과 누나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잘 나타나고 특히 군수사당국이 마땅한 계기를 찾지 못하자 애인관계 운운했던 데서도 잘 드러난다.

3. 여기에 의문을 더하는 것은

1) 자살자의 경우 상식적으로 남기기 마련인 유서가 없다. 특히 가정문제 때문이라면 가족에게 어떻게든지 남길 말이 있었을 것이다.

2) 추대식 소령과 조금체 대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건이 있고 나서 찾아간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런 행동은 진실을 밝히려는 가족들에게 무언가 두려움을 가졌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1987년 6월 18일 현장 검증에 가족이 참여하였다. 당시 수사관 정진화 상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당일 일정이 09:00~10:00까지 5분 대기조, 11:30분까지 휴식 후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충정교육이 있어 집합을 시켜 보니 이이동이 없었고 이이동의 개인화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부대앞을 수색했고, 다시 뒷산으로 수색대가 나가다가 방위병 봉금점이가 부대후문앞 묘에서 “이이동”하고 부르자 500미터 떨어진 산속에서 총성이 들리고 7~8분 후에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먼저 중대원이 32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점심시간내 이이동이 없는 것을 못보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다. 더구나 총까지 들고 나갔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권영고 소령과 방호윤 군의관의 진술이 서로 달랐다.

권소령은 87년 6월 15일 밤(사건당일) 가족이 도착한 마산 육군 통합병원 영안실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때 현장에 가보니 이이동이 숨을 헐떡이고 있더라. 그래서 부둥켜 안고 ‘이동아’하고 불렀다”라고 했다.

방호윤은 현장검증이 있고나서 영안실에 갔을 때 “그때 가보니 시체가 싸늘하게 썩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봉금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권영교와 방호윤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고 분명히 진술해 놓고는 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러한 군수사 당국의 발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88년 2월 2일 24:00 노용인(동향인 전남장흥, 87년 3월 29 사단 상사로 정년 퇴임. 부대근처 마을 통장)을 만나 노용인과 동료였던 이계수(현 보안대 근무)를 통해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용인의 말에 따르면, 이군의 부친이 이계수에게 알아본 결과 이계수의 사정상 직접 나서서 조사하지는 못하고 최초 목격자 봉금점 방위병과 이이동과 가장 친한 동기동료 이인택 일등병을 보안대로 불러 심증을 떠보니 “자살은 아닌 것 이 확실하다”“12시와 1시 사이에 산에 올라 간 적이 없다”(즉 점심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됨)고 했다(이에 대한

내용은 녹음되어 있다)

김상원(당시 병장) 말에 따르면 당일(87년 6월 15일) 오전에 10:30까지 5분대기조를 마치고 1시간 휴식 후 점심을 먹고 14:00부터 충정교육을 실시했는데 조금체 대위(경비 2 중대 중대장)가 강연을 하고 나서 “대학생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사람 나와라”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자 이이동 동지를 지목하여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조금체대위가 분개해서 주먹으로 우측 눈두덩이를 구타,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부동자세로 서있는 이이동 동지의 낭심을 군화발로 구타 실신하자 중대원 중 1인이 이이동을 업어 내무반으로 옮겨 한참 후 의식이 회복되고 아프다고 소리치며 고통스럽게 내무반에서 뒹구니까 조금체 대위가 이윤일(행정병, 병장)을 시켜 업고 중대장이 뒤를 따라 나갔고 그후 28분 정도 지나 총성이 들렸다고 한다.

4. 사건전반에 걸친 의문점

1) 이이동 동지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미지의 총상에 관한 의문.

당국의 발표는 ‘사입구 직경 3센티, 길이 5,712센티, 사출구 직경 4센티’라 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이동 동지의 총상은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눈에 띄게 크다. 사입구는 상처부위보다 총길이 12센티, 사입구 직경 8센티이고 사출구는 상처부위가 총길이 5센티, 사출구 직경 3센티이다.

이는 상식에 어긋난 총상이다. 사입구와 사출구가 바뀌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총기 엠16의 경우는 총알이 회전하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항상 사출구가 사입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군당국의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맞추는 인상이 짙다.

2) 이이동 동지의 사망 현장에서 엠16 총기의 위치에 관한 의문.

최초의 증인 봉금점에 따르면 총기는 상자의 바깥쪽에 올려 있었다고 한다. 총기가 처음에는 상자의 바깥쪽에 놓여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사체에 가까운 안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총기가 상자의 바깥쪽에 있으면 사망자가 총으로 자살을 한 후에 거리가 떨어진 상자의 바깥쪽에 총을 놓을 수가

도저히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의도적으로 위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옮겨진 총기의 위치도 사망자가 총기로 머리를 쏘고 총기를 두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3) 이이동 동지의 앞에 놓여 있는 상자(앞서 말한 총기 가 놓여 있는 상자)의 상태가 사전의 경우 서로 다르다는 것.

첫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상자가 뚜껑이 덮여 있고 총기도 상자와 직각으로 놓여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상자의 뚜껑이 열려있고 내용물이 나와 있으며 총구가 이이동 동지의 머리 부분을 향하고 있다. 두 가지 사진중에 어느 것 하나는 사실이 아니다.

4) 군당국에서 주장하는 ‘자살 가능한 방법’의 경우에 관한 의문.

군당국에서 이이동씨가 ‘총구를 우측 두부에 밀착시켜 격발 발사되므로’라고 하였다. 그리고 ‘엠16소총의 길이와 총구에서 방아쇠까지의 길이 등을 볼 때 이이동 동지의 신장이 172센티미터, 팔길이가 92센티미터 정도이며 총기를 상자위에 놓고 총구를 머리에 밀착시킨 후 우측 엄지 손가락으로 자살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군당국의 발표중에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신장 172센티에 팔길이 92센티이다. 이이동 동지의 신장은 172센티가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사람의 팔길이는 신장의 반에 해당한다. 이이동 동지의 경우는 가슴 몸통을 포함하여 86센티가 정상이다. 팔길이 6센티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것은 사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자살한 경우를 만들어 내다보니 그만 팔이 6센티나 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사진에 나오는 총기를 보면 총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안전장치의 ‘안전, 반자동, 자동’ 중에 ‘안전’에 가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국에서 사고 후 안전으로 옮겼다해도 증거 보존을 위해 찍어둔 사진에는 사실대로 나와 있었어야 한다. 이는 총기의 안전장치에 관한 증거 조작의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6) 이이동 동지의 낭심에 붉은 타박상과 우측 주변의

파란 명, 두정부의 상처에 관한 의문.

가족이 군당국에 제출한 탄원서에 관한 민원 회신에서는 '최신 법의학'까지 인용하면서 "음낭은 사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부 표면이 변하며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군당국이 최신 법의학까지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은 겨우 그럴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고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이전에 타박상 등 충격을 받은 부위가 가장 먼저 변색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왜 언급이 없는가?

7) 다음으로 평소 이이동 동지는 시력이 나빠 안경이 없어 거동이 불편하였을 정도인데 사건현장에는 안경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이동 동지가 500미터나 되는 산길을 안경이 없이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8) 이이동의 사망 사진은 그 원인이 머리의 관통상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M16소총으로 Th았을 때의 총상이 아니라 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2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첫번째가 파열상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며 그 두번째가 총상 출구가 두개로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

■ 정연관 (21세)

1966년 12월	강원도 삼척군 출생
1984년 2월	포항 대동고등학교 졸업
1986년 5월	군입대
1987년 12월 4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군부재자 투표 후 사망

1. 사건 경위와 의문점

지난 87년 12월 4일 고참에게 기합을 빈다가 사망했다고

발표된 육군 8350부대 군수지원단(경기 벽제읍 소재) 정연관 상병(당시 22세)의 시신은 벽제화장터 11번 코너에서 화장되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당시 부재자 투표 관련 설로 정치사건으로까지 비화됐던 정군 사망 사건은 정군을 구타, 사망케한 백병장(22)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형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는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정군의 어머니 임분이씨(54)는 당국의 발표를 부인하고 끈기있게 "정군이 부재자 투표에서 야당을 찍어 맞아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군의 장례식 때도 임씨는 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생매장하라고 부르짖었다. 임씨는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연관이를 묻는 행위는 생매장과 마찬가지다"면서 "현정권의 탄생과 관련되어 죽은 연관이는 이 정권이 존속하는 한 눈감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정군이 사망한 87년 12월 4일은 부재자 투표일이었다. 그 날 저녁 부대원은 싸리작업을 마치고 6시 반경 부대로 복귀, 부재자 투표를 마쳤다. 취침점호후 백병장은 금속수리반 9명을 기상시켜 침상에 일렬로 세워 놓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차례로 가슴을 쳤다. 각각 2대씩이었다. 정군은 왼쪽에서 6번째 위치해 있었다. 백병장이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을 칠 때쯤 정군을 여러 명이 일으켜 세웠다(백병장의 진술). 5일 새벽 5시 경북 대구에 있는 집으로 사망통고가 전화로 왔다. 통고를 받고 깜짝 놀란 가족들은 "사망 이유가 무었인가?"라고 묻자 부대 관계자는 "와 보면 안다"라고 답할 뿐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다. 가족들은 당일 급히 부대에 찾아가 다시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군관계자는 "사흘 후에 훈련이 있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장 백제윤이 내무반에서 사병들을 9명 침상꼴에 세우고 두 차례나 돌아가며 주먹으로 구타하여 정상병이 관물대에 머리를 밟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6일 날 아침 일찍 부대에서 부검하자고 제의했으나 가족들은 거부하고 정상병과 함께 구타를 당한 동료들과 면담하기를 희망하여 상병 이호택의 동료 1명과 면담했다. 가족들은 "정상병이 사망할 때 직접 목격 했느냐?"라고 묻자 홍분한 상태에서 "당시 보초서기 위해 나가려고 했는데 총에 실탄만 있었으면 모조리 갈겨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대답을 들자 "연관이가 매를 많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 때 "정상병은 태권도가 3단이고 유도를 할 줄 알아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구타로 죽지는 않았는데 연관이를 왜 죽였느

나!"고 항의 했다. 그러자 군의관이 "정상병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잘못 없는 연관이를 왜 죽였느냐. 연관이를 죽인 사람을 데려와 사과시키라."고 격렬하게 항의 했지만 "병장 백제윤, 병장 김용용, 병장 홍의표, 하사 김택기, 중사 배재천, 대위 김판식 등 피의자 6명"중 하사 김택기만 불구속되고 나머지 5명은 구속되어 수감돼 만나볼 수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으니 그냥 화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후 병장 백제윤은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으나 나중에 감형되어 18개월 정역을 살고 출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한달 살고 모두 나왔다.

백병장은 심문에서 "정군과 개인 감정은 일체 없었고 정군이 같은 금속수리반의 조수로 함께 근무해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정군을 폭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군당국이 조사한 사건 개요 설명에서는 백병장이 정군을 손바닥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병장은 두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진술, 중요한 사인이 되는 구타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고 있다. 신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외력에 의한 원발성 쇼크사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부검결과는 추후 통보한다"고 나왔다. 그러나 시신의 정황으로 보아 전혀 그렇지 못했다. 목 뒤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또한 양 엉덩이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등뒤에도 청자색으로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 두 차례에 의한 주먹질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씨는 자신이 복역중인 백병장을 면회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면회를 거부한 사실과 피해자 가족인 자신에게 백병장의 재판 일자를 통보해주지 않은 경위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제대한 사람으로부터 정군이 야당 찍어 기합받다 사망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제윤이 시신 앞에 서서 절을 하자 "연관이를 왜 죽였느냐. 개인 감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아니오" 소리만 3번 반복해서 대답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검이 이루어졌다. 심문에서도 "정군과 개인 감정은 일체 없었고 정군이 같은 금속수리반의 조수로 함께 근무해 친한 사이였다"고 말하고 사고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정군을 폭행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라고 했다. 군당국이 조사한 사건개요 설명에 의하면 백병장은 정군을 손바닥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병장은 두 주먹으로 구타했다고

진술, 중요한 사인이 되는 구타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검이 끝난 후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시키기 위해 들어갈 때 어느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정상병 죽음은 세계 만방에 알려도 영광된 죽음이다." "정상병은 하늘 나라에 갔을 것이다."라는 말과 "영결식을 성대하게 치루어 줄 것이다."라는 말을 어느 장교가 했다. 화장을 하고 뼈를 가지고 정상병이 근무하던 부대로 이동하는데 수십명의 군인들이 열을 지어 있으면서 격렬하게 오열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에서 마련해 준다는 차를 거부하며 봉고승합차에 유족이 있는데 동료들이 "제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오열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정상병이 단순히 기합을 받아 한 두차례로 얻어 맞은 구타로 죽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정상병은 군대에 가기 전 대구 계명대 앞에서 선물의 집을 운영하며 변혁운동도 하며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비록 군대이지만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 후보에 기꺼이 한 표를 행사한 맷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반드시 선거와 관련되어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평소에 썼던 일기장에 틈틈이 부대에서 느낀 점을 기록해 둔 것을 동료인 병장 홍의표가 소지하고 있으면서 "정상병이 각오를 단단히 했다"고 증언하며 제대 후 병장 백제윤과 병장 홍의표의 동료 1명이 사회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가족이 제대한 당시자들을 만나 보았으나 저마다 말이 틀렸다. 유족이 백병장을 상대로 녹음을 해 둔 정확한 근거로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전부터 방위병까지 전부 불러 기호 1번 노태우 후보를 찍으라. 몇 %까지 나오지 않으면 지휘관들이 웃을 벗는다."는 교육을 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 아침에 잃은 임씨는 정군이 죽은 후부터 하루도 집에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현정권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연관이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자면 이땅이 민주화 되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 임분이 어머니의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 어머니 호소문

국회의원 여러분!

자식은 죽어 부모가슴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22년 곱게 키워온 내아들 조국 대한민국의 부름을 받고 자랑스러워 하더니 조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마음에 목숨을 바쳐야 했던 아들의 죽음이 끝수에 사무처 공스러운 저의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할지 모라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지난해 박종철군과 이한열군의 희생과 함께 뜨겁게 타오르던 민중항쟁으로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찾았는가 했더니 또다시 12월 4일 부재자 투표후 내자식마저 죽여버린 살인극을 연출한 피도 눈물도 없는 군부 만행과조작을 밟며듯이 해대고 있는 독재에 대항해서 민중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려하니 악명높은 실인마 백골단과전경을 앞세워 부정, 부패, 은폐, 조작을 하고 있는 높고 두터운 독재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하는 이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전 국방부장관 정호용이가 내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왜곡 보도하였음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아실것입니다. 과연 A.T.T훈련을 앞두고 기합을 주던중 가슴 두대 맞아 죽었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까. 내아들의 시신등쪽 전부가 청자색으로 병들어 있었고 다른 몇군데에도 파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간의사가 와서 부검을 한다고 해놓고 사복한 군의관 양두익이가 부검한 것은 우리 유족의 눈가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의관의 부검서가 원발성 쇼크사라고 허위조작하였으나 부검서의 내용만 보아도 가슴두대 맞아 죽은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의사가 부검한다고 속이고, 쇼크사 또는 심장마비로 조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지난 12월 4일 군부재자 투표를 한후에 죽었다는 사실과 여러명의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구가 고장인 놈이 왜 1번을 찍지 않았느냐, 빨갱이냐, 간첩이냐 하면서 마구 때렸다는 말과 그 이후 지금까지 5개월동안 수차례 내아들 부대에 찾아가서 대대장과 중대장 등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도 않는 말들을 해대며 횡설수설, 우왕좌왕 하는 모든것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1번을 찍지 않은 것도 죄입니까? 야당을 찍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아들의 죽음이 현정치에 어두웠던 엄마의 눈을 새로 뜨게 하였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죽음 그 진상을 밝혀서 생의 가장 왕성한 나이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한때

를 보내는 군인들이 군부독재정치의 제물이 되고 그 죽음이 억울하게도 조작되는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저와 같이 억울하게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설움과 한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부모가 두번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군복무중에는 강제로 집권여당을 찍어야 하는 억울함이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기위해 이 죽음의 진상을 올바로 파악하고 심판하여 지금까지 부재자 투표가 으레히 집권여당의 고정표로 생각해 왔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고 더이상 권력 행에 얹압되어 자신들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는 달리 엉뚱한 곳에 투표하는 일이 없어 대한의 젊은이들이 상관들만이 아닌 야당측 참관인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져서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으로 올바른 권리 행사를 하여 보다 완전한 민주국가를 이룩해가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이 몇명인데 그 수많은 표를 방치해야 합니까. 새로이 당선되신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의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되고 입이되고 소리가 되어 거듭거듭 이 일을 국회에서 거론하여 올바른 심판을 하여 주십시오. 군에서의 죽음은 개죽음이라하여 자식을 군에 보내며 그 아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는 세상을 바로잡아 나라를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도 늘상 유난히도 환하게 웃던 제 아들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진정 조국을 위해 죽었노라고 이 어미 조국 대한민국에 아들을 바쳤노라고 그 영광되 이름으로 이 한을 조금이라도 씻어 내릴수 있도록 이 어미의 편안한 호소문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죽음의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故 정영관 상병의 어머니 임분이

■ 박종근 (25세)

1963년	경북 상주 출생
198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입학
1988년	방위병으로 입대
1988년 8월 1일	동사무소 창고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됨

< 보약상납 거부하다가? >

1. 사건개요

박종근씨는 방위병으로 중대본부에 근무하면서 중대장과 현병대 파견대장으로 부터 녹용이 든 보약을 지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근무상 괴로움을 받아오던 중, 1988년 8월 중대본부에 출근하여 아침 8시 5분에 동 사무소 창고에서 화재와 함께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며 현재 경찰조사 및 군수사기관에서 조사결과는 분신자살로 인한 기도 질식사로 종결되었다. 당시 가족과 동국대 경주분교 동문들의 이의 제기 및 군수사기관의 허구성을 유인물을 통하여 폭로하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했으며 9월 5일자로 예비군 중대장은 해직 통보되고 중대장과 파견대장은 군수사기관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2. 사건경위

· 박종근이 한의대를 졸업하고 6년째 대학을 나왔으나 가정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한 중대장 이이규와 현병대 파견대장 권안정은 사고발생 1주일 전부터 녹용이 든 보약을 지어오라고 무리한 요구.

· 박종근은 백만원이 넘게 드는 보약을 지어 오라는 중대장의 무리한 요구에 고심하던중 가정형편상 어려움속에서 살고 있는 내용을 중대장에게 편지로써 전달하였음.

· 중대장은 87년도 예비군 훈련 계획표를 종근이가 잊어버렸다고 뒤집어 씌워 궁지에 몰아넣고 그 문서를 찾지 못하면 남한산성에 갈지도 모르고 한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며 협박과 함께 보약 상납 요구.

· 7월 30일(토) 박종근,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여 줄것을 간청하였으나 중대장은 낚시간다하여 만나주지 않음. 종근이 가지고 있던 돈 10만원과 어머니가 5만원 합계 15만원을 준비하여 집안사정을 말하려 31일 저녁 중대장 집으로 찾아갔으나 중대장은 낚시가고 부재중이라 15만원을 전해주지 못하고 돌아옴.

· 8월 1일 7시 50분 박종근 출근코자 집을 떠남.

7시 55분 동사무소 도착.

8시 5분 동사무소 창고화재.

8시 15분 동사무소직원 남순옥 화재신고.

8시 18분 소방서 화재신고 접수.

8시 19분 소방차 현장도착.

· 박종근이 8월 1일 출근하여 8시경 매월 2회실시하는 동사무소 주위청소를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정문으로 들어와 동사무소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창고 문을 연후 다시 동사무소에 열쇠를 놓고 간지 7 - 8분후 평 소리와 함께 동사무소 창고에 화재가 남.

동사무소 당직자 배기학씨가 창고쪽으로 갔으나 이미 연기에 휩싸였으며 바로 동사무소 여직원 남순옥에게 화재신고 하라고 지시후 다시 창고쪽을 가서 문을 빨리 살짝 밀어보니 박종근의 다리가 보임. 조금후 소방차 도착.

8시 27분 화재조사관, 머리를 문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는 박종근을 끌어냄.(이때 등에 불붙음)

시체는 경주 기독병원에 안치되고 사건발생 3시간후 부모에게 연락하였고 8월 2일 사체의 형태에 의문을 품은 한의학과 친구가 영안실에 접입하여 사진 10여장 찍음.

· 8월 3일 오후 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사체 옮겨 백부, 불교한방병원원장 참관하에 부검실시(30 - 40분 소요, 기도, 배, 낭심, 뇌) 기도에서 쌀알만한 분진발견 뒷머리에 직경 5센치 멍.

· 8월 3일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체인도 거부, 군당국 행정체계 앞세워 부모동의없이 화장.

3. 군수사당국 발표

· 군수사기관에서 8월 3일 염세주의적 성격, 여자문제와 가정문제로 인한 분신자살로 종결.

· 동국대 동문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유인물

살포 등의 활동으로 여론화에 밀려 군수사기관에서 재 조사에 착수, 8월 29일 중대장과 현병대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

· 9월 5일 중대장 직위 해제.

4. 조사문제의 가능성

박종근의 사망직후 현병대 대경대장이 박종근의 가족의 허락이 없이 박종근의 집을 뒤져 중대장에게 보낸 편지와 비망록에 메모한 쪽지 등 사건진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감.

소방서의 화재 조사관이 창고에서 시체를 끌어내었을 때 그때 상황은 시체가 머리쪽이 문을 향하여 반듯하게 누워 있다고 주위사람에게 중언하였으나, 최초 목격자 동사무소 당직자인 배기학이 경찰 진술에서 문쪽으로 다리가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민주당 조사시 소방서 화재 조사관에게 그 당시 목격 상황을 조사하던 중 배기학의 진술에 맞추기 위하여 문에서 다리가 보였다고 번복 진술함.

군 기관에서 상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분신자살로 발표하였으나 자살로 처리되기에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의혹이 있음.

1) 분신 자살을 할 경우에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으나 조용히 비명한번 지르지 않고 누워 죽어있던 점.

2) 분실 자살일 경우 몸을 뒤척이므로써 안경이 떨어져야 할텐데 사진을 보면 안경테가 녹아 눈부분에 안경이 녹아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누운 상태에서 기름을 봇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

3) 분신 자살시 뜨거워서 손으로 벽을 긁게 되므로써 손톱과 손 끝부분이 상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손끝이 깨끗한 점.

4) 분신 자살시 몸이 고르게 타야 하는데 등뒤에는 타지 않고 시체 끌어낼 때 불이 붙어 약간 탄것으로 보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봇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큼.

5) 부검당시 머리뒤에 5센치 가량의 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직전 구타 당했을 가능성.

6) 어려운 가정속에서 독자로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사회적 처지와 함께 그 동안 고생한 가족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의욕적 생활을 하였으며 하등의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함.

7) 유서나 기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글이 전혀 없는 점.

5. 경찰 조사자료

동국대 동문의 진상조사단이나 평민 조사단 기타 가족이 경찰조사의 내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함. 민주당 조사시 조사계장에 자료요청하여 경찰조사에서의 모든 조사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었음.

경찰조사 관계자료는 두께 약 1.5센치 되는 자료가 있었으나 화재원인을 조사한 목격자와 기타 관련자의 진술내용과 사진들 그리고 군기관에서 보내준 부검결과 자료가 있었음.

부검결과 내용에는 분신으로 인한 이물질의 기도 절식사로 되어 있으나 기도에 있는 이물질은 계속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경찰에 있는 조사자료의 복사를 요청하였더니 다음날 수사과장에 보고하고 복사해 주겠다고 승락해서 9월 5일 경찰서에 들렀으나 수사과장이 부재중이라 복사를 못하고 귀경.

6. 민주당 인권국 본 사건 담당자의 의견

본 사건은 군수사기관에서 이미 주대장과 현병대장을 구속조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사인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

군수사기관에서의 조사이었기에 군 내부에서의 모든 사항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함.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물질이 끼어 절식된 점으로 보아 분신당시 평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중에 며 있는 분진이 호흡중에 끼었을 것으로 보임.

분신 당시 이물질이 기도에 끼인 점으로 호흡은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기절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됨.

■ 박성은 (21세)

1969년 12월

광주 출생

1989년 2월

광주 농업고등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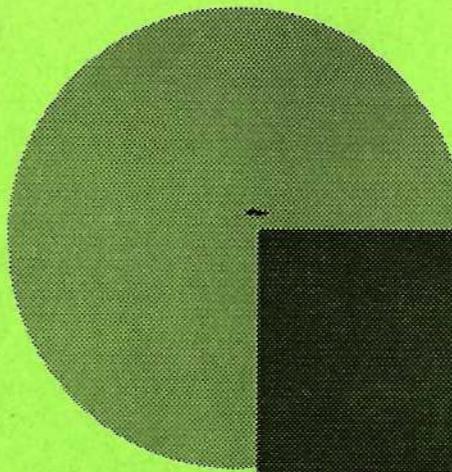
1990년 4월 9일

방위병으로 입대

1990년 5월 24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고교시절부터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며 의식을 키워왔고, 방위근무 중이었던 90년 5월 사망 직전에 쓴 일기에는 “오월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적기도 했다. 제31사단 사단 직할 11병참선 경비대대에 배치된 그는 부대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과 군부대내의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주일 가량 부대 내에서 모종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후 외출하였으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가 5월 24일 새벽 5시 40분경 거주지인 광주 중앙교회내 유치원 놀이터에서 어머니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건 이후 5월 15일 작성한 문건이 모두 분실되었고, 부대에서 일주일 이상을 억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자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첨부자료 10 - 기타 자료 3 - 외국사례

- 남아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남아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자료제공 : 이창수 (한국구제문제연구소)

남아공화국은 지난 94년 역사적인 흑백 자유총선을 통해 350년간 지속되어 온 소수백인통치를 종식시켰다.

다수 흑인에 대한 소수 백인의 지배는 인종 차별과 종족간 유혈 충돌로 얼룩진 피의 역사를 불러왔다. 이제 새로운 현정체제 아래 평등과 민주 사회로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남아공은 국가 재건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싸우면서 폭력과 유혈로 얼룩진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와 겨루고 있다. 남아공화국의 경험은 군부독재 하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광주라는 유혈 충돌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아공화국의 과거청산 작업을 연구하는 일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남아공의 모델을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공 정부와 국민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오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반성과 교훈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은 공식적으로 지난 48년 백인 정당인 국민당의 집권으로 등장했다가 94년 4월 다인종 참여 총선을 계기로 역사에서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남아공의 흑백 차별은 사실상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희망봉에 도착, 케이프타운에 식민기지를 건설한 17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의 희망봉 도착, 백인 식민지 건설
- ▶ 1947년 국민당 집권 이후 공식화
 - 50년 <인종등록법> 제정 : 주민을 인종별로 분류해 등록
 - 59년 <반투자치촉진법> 제정 : 흑인들을 종족별로 분류, 흄랜드(흑인자치구)에 귀속
 - <통행법> 제정 ⇒ 샤프빌 학살
 - 76년 <소웨토 봉기>
- ▶ 86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국과 EU, 대남아공 경제제재 단행
- ▶ 89년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 취임

▶ 90년 데 클레르크, ANC를 비롯한 60개 이상 반정부단체 합법화, 넬슨 만델라 ANC 의장 석방. 비상사태 해제

▶ 91년 <인종동록법> 폐지, 정부/ANC/17개 정치단체, 새헌법 협상 개시.

▶ 1992년 백인만의 선거 : 백인통치 종식 인정

▶ 93년 7월 잠정헌법안 채택 : 인종평등, 3권분립, 연방제 도입 풀자 / 다인종 임시 행정위원회 구성

▶ 94년 4월 다인종 총선 실시

2.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 배경

1) 잠정헌법 제 200조

이 헌법은 분쟁, 갈등, 침묵에 가려진 고통, 불의로 대표되는 분열의 과거 사회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피부색, 인종, 계급, 종교, 성과 무관한 남아공화국 국민 전체의 평화로운 공존과 발전 기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건설될 미래 사회 간에 역사적 다리를 놓는다.

국가 화합과 남아공화국 국민 전체의 안녕의 추구는 남아공화국 국민과 사회 재건 간의 화해를 요구한다.

이 헌법의 채택으로 남아공화국 국민은 폭력, 갈등, 대물림의 증오, 공포, 죄, 복수의 나날 속에 무수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주의 행위를 양산했던 분열과 분쟁의 과거를 극복하는 초석을 놓는다.

상기 내용은 복수가 아니라 이해의, 보복이 아니라 보상의, 회생이 아니라 ubuntu의 필요에 근거한다.

사회통합과 국가재건을 이룩하기 위하여 과거 갈등 상황 하에 정치적 동기로 인해 비롯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에 대하여 사면을 행한다. 이 헌법 하에서 의회는 1990년 10월 8일 이후, 1993년 12월 6일 이전에 사면 종료일을 결정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사면에 필요한 절차, 기준, 진행 방식,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를 포함하

는 법률을 채택한다. 이 법률이 통과된 후 각 조항에 따라 어느 때라도 사면을 행한다.

이 헌법과 공약을 통해 우리 남아공화국 국민은 역사의 새 장을 연다.

2) 국제 인권 규약

국제 인권 규약은 새로 수립된 모든 정부에서 과거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진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식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고,

▶ 가해자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 범죄 계획자, 가해자, 회생자의 신분과 더불어 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1995년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Bill)은 잠정 헌법의 요구와 국제 인권의 요구를 결합하여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의 목표는 위원회에 위임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활동은 1)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2)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에 대한 사면 허가 3)회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보상 조치의 권고이다.

3) 구 사면법의 폐지

구 사면법은 1995년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러나 구 사면법 하에서 행해진 사면은 잠정적 효력을 지니며 이 법률에 의해 주어진 사면은 위원회 설립 이후 12개월간 효력을 지닌다.

4)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의 기본정신

- 법무 장관 둘라 오마르(Dullah Omar)

의회 안팎에서 이루어진 오랜 기간에 걸친 토론과 논쟁 끝에 마침내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1993년 잠정헌법의 마지막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나는 의회로 가서 사면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 회생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회생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효과적인 배상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사면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상처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나는 ANC와 PAC의 상처를 구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화국 국민들이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답하려고 한다. 다행히 우리는 남아공화국의 진정한 화해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종적 성적 차별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에 참여했던 인물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인권 유린에 관계된 진실이 묵인되거나 간단히 잊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우리를 다수는 이 신념을 지지한다. 진실은 조사, 기록되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 설립을 지지한다. 민주주의 정부는 우리 나라의 인권 문화 건설을 지지한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절연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용서하되 잊지 않고 인권 존중에 기초한 미래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남아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있어서의 새로운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은 정부나 국가가 애국 시민에게 베푸는 호의로 대물림되는 선물이 아니다. 인권은 모든 국민 개

개인의 권리이다. 이 권리에 대한 모두의 책임감을 통해 인권의 길을 밝히고 그 길을 앞당기며 과도기를 건너는 우리 사회에 국제 경험에 기초한 표지나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험과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인권이 소수에게 물려지는 유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태고난 권리임을 확인하는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출발하여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미래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마녀 사냥이나 인권 유린자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기소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아공화국 국민이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과거와 화해하고 화해의 명분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진실의 추구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진실이 없이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

3.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목표

위원회의 목표는 지난 시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국가적 통합과 화해를 이룩하는 것이다.

▶ 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여 1960년 3월 1일부터 법률에 명기된 종료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자행된 반인권적 폭력의 원인, 성격, 정도를 그 회생자의 관점뿐 아니라 폭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동기와 관점, 그리고 폭력의 전례, 정황, 요인, 문맥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완전히 밝힌다.

▶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와 법률(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의 조항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사실을 전면 폭로하는 자들에게 사면을 행한다.

▶ 회생자의 운명과 행방을 알리고 회생자가 당한 폭력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각에 맞는 배상책을 마련하여 회생자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을 회복시킨다.

- ▶ 이후의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책들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목표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하게 된다.

- ▶ 다음의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발의, 조정, 조사한다:
 - 조직적 학대를 포함한 반인권적 폭력 사례
 - 위의 폭력을 유도한 전례, 정황, 요인, 문맥, 동기와 관점을 포함하여 반인권적 행위의 성격과 원인, 정도
 - 위의 폭력에 개입한 모든 사람과 공공기관, 제도의 정체
 - 위의 폭력이 국가 또는 이전 정부나 정부 조직이나 정치 조직의 의도적 계획의 일부로 비롯된 것인가의 문제
 - 위의 폭력에 대한 정치적 혹은 기타의 책임성
 - ▶ 폭력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희생자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과 증거 접수의 통로를 제공하고, 이를 발의, 조정한다. 폭력 희생자의 신원과 종적을 밝혀내고 희생자의 행방 및 그들이 당한 위해의 성질과 정도를 밝힌다.
 - ▶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모든 연관 사실을 전면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에 대한 사면 허가를 적용하며 이 적용을 사면 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보를 통해 사면 허가 결정을 발표하여 정치적 동기에 의한 가해 행위의 사면 허가를 촉진한다.
 - ▶ 반인권적 폭력 또는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행동을 은폐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앤 문건을 조사한다.
 - ▶ 사실적, 객관적 정보와 이 정보에 의거해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내용 착수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다.
 - ▶ 다음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 이후 희생자들의 배상 문제에 관해 마련해야 할 정책이나 희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 희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잠정적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 ▶ 법안의 목표를 위해 중인 보호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을 장관에게 권고한다.

- ▶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제도의 창출과 인권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제도적, 행정적, 법적 조치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5.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구성

- ▶ 위원회는 대통령과 내각의 상의 하에 임명된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 ▶ 대통령은 내각과 상의하여 위원들을 임명한다.

- ▶ 위원들은 공정하고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갖지 않은 자라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 아닌 자의 위원 임명은 2명 이하로 한다.

- ▶ 대통령은 임명 위원을 정부 관보에 발표한다.

- ▶ 대통령은 위원 가운데 1인을 의장으로, 다른 1인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 ▶ 법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은 위원회의 존속 기간 동안 위원직을 준수한다.

- ▶ 위원들은 어느 때라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 ▶ 대통령은 부정 행위나 무능을 근거로 위원회 전체의 결정과 국회 및 상원의 동의에 따라 특정 위원의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 ▶ 특정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위원직을 박탈당하거나 죽을 경우 대통령은 내각과 상의하여 위원회의 남은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빈 위원직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6.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구조

1) 인권 침해 소위원회

인권 침해 소위원회(Committee of Human Rights Violations)는 본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외는 별도로 1960년 3월 1일부터 1995년 5월 9일간에 걸쳐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거나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석방 혹은 감형이 이루어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조사한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진술과 불만 내용을 기록한다.

또한 위원회는:

- ▶ 그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조직, 위원회, 개인들로부터 가혹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 또는 접수한다.

- ▶ 본 위원회의 기능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본 위원회에 자문을 행한다.

- ▶ 다른 두 소위원회나 하위 위원회 혹은 조사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 소위 활동과 그 밖의 특정 문제에 대해 소위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관한 잠정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인권 침해 소위원회는 법안 제6장과 제7장에서 본 위원회에 부여한 조사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는 본 위원회의 권한, 기능, 의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본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종속된다는 내용과, 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소위원회의 권리, 기능, 의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조사하는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종속되는 조사단의 설립이 뒤따른다.

2) 사면 소위원회

사면 소위원회(Committee on Amnesty)는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행위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전면 폭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면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정

부 관보에 사면 허가 결정을 발표해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행위에 관한 사면 허가를 촉진한다.

사면 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선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규정 양식에 따라 본위원회에 사면 허가를 신청한다. 사면 소위 청문회는 대법원 판사를 의장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공개 청문회가 인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기본 인권에 위배될 경우 의장과 소위의 판단에 따라 비공식 채널로 개최된다. 절차는 서로 다른 양식을 떨 수 있다. 일단 신청서가 소위에 접수되면 소위는 사면 요구가 적절할 경우나 청문회에 소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나 신청자의 가해 행위나 묵인 행위가 심한 인권 침해 사례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를 소환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로 사면 허가하고 차후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소위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는 신청자의 사례를 듣고 심의하게 될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다. 그 후 해당 신청 사례를 검토하여 사면을 허가하거나 불허한다. 사면 조건에 명기된 규정 가운데 하나는 신청자가 모든 연관 사실을 사실을 완전히 폭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기준으로 사면 판결을 내린다.

- ▶ 인권 침해 행위, 묵인 행위, 가해 행위를 자행한 사람의 동기.

- ▶ 인권 침해 행위, 묵인 행위, 가해 행위가 발생한 정황, 특히 그러한 침해, 묵인, 가해 행위가 정치적 봉기, 혼란, 사태나 그에 대한 대응 과정으로 혹은 그 일부로 자행되었는가의 여부.

- ▶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의 정도를 포함하여 그 러한 침해, 묵인, 가해 행위의 법적, 사실적 성격.

- ▶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의 대상이나 목적, 특히 그러한 침해, 묵인, 가해 행위가 일차적으로 정적이나 국가 재산이나 집단을 겨냥한 것인지 개인 재산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인지의 여부.

- ▶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가 조직, 기구, 해방 운동을 통해 혹은 그러한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조직원,

대리인, 혹은 지지자인 조직의 명령이나 조직의 대신으로, 혹은 조직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와 그 행위가 겨냥한 정치적 목표와의 관련 여부, 특히 그러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와 정치적 목표와의 관련의 직접성, 인접성, 비례 정도.

이 내용은 법안 제(2)조 소항목에 언급된 자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조에 언급된 사람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개인적 이익을 동기로 지닌 자: 국가나 이전 정부, 정치 조직, 혹은 해방 운동의 정보 제공자로서 금품이나 금품과 유사한 뇌물을 받은 사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는 해당자가 그의 정보의 댓가로 금품이나 금품과 유사한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희생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악의로 범죄를 자행한 자.

3)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Committee of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는 :

▶ 본위원회와 인권 침해 소위원회, 사면 소위원회에 제기된 문제들을 심의한다.

▶ 희생자의 신원, 종적, 행방에 관한 증거 자료와 희생자가 당한 위해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는:

▶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에 관하여 긴급 잠정 조치를 권고한다.

▶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의 창출과 인권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권고한다.

▶ 본위원회에 소위 활동과 관련된 잠정 보고서를 준비, 제출한다.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소위의 활동, 조사 내용, 건의 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희생자 배상 및 보상 소위원회는 희생자의 종말이나 행방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희생자가 당한 폭력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며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을 건의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존엄성을 회복한다.

7.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활동 수행을 위해 특정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권한은 조사와 지방 감사, 청문회 개최, 연구원 임명, 증거 제공이나 문건 제작 혹은 기타 사항에 요구되는 인물의 소환권과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에 의거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권이 포함된다.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환된 사람은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를 지닌다. 자신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답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답변자 자신을 고발하는 답변, 문건, 그 밖의 증거는 법정에서 답변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8.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 기한

위원회는 설립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수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 하에 6개월 이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활동을 완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소위원회 활동이 완결되면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최종 보고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판보로 발행되어 전국에 배포,

남아공화국의 모든 국민에게 알려진다.

9. 진실과 화해 위원회 운영기금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에 맞는 방식으로 법무부 장관 및 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 기금을 건립한다. 대통령 기금은 본 기금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서 조달하는 돈과 본 기금에 기증되는 돈과 기타 조달원을 통해 기금에 모아지는 모든 돈으로 운영된다.

본 기금을 통해 대통령이 규정한 배상책에 따라 각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이 지불된다.

10. 진실과 화해 위원회 사면 소위 성명서

No. R. 36

1995년 국가통합과 화해 촉진법 20항 (6)에 의거한 성명서(1995년 법률 34조)

1997년 5월 20일, 1995년 법률 34조 20항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면이 행해짐 :

(a) Maxim Phakanisa (1954-11-18 출생)와 Two-Boy Jack (1954-04-10), 1991년 7월 22일 The Cape 지역에서 10 차례의 살인 미수와 2 차례의 불법 화기 및 탄약 소유에 대하여.

(b) Patrick Mzingisi Ndumbini (1964-04-15 출생), The Cape 지역에서 1991년 10월 13일과 27일 각각 Ndimphiwe Ntekiso와 Eric Xeketwana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하여.

(c) Thami Robert Btsobani (1973-09-17 출생), 1992년 9월 25일 불법 화기 및 탄약 소유와 교도소 관리 체제 위반에 대하여

11. 사면 결정에 관한 보도 자료

진실과 화해 위원회 제공

(다음 자료는 사면 신청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신속히 필요로 하는 저널리스트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 문서가 아님을 밝혀둔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 소속 사면 소위는 1990년 10월 더반 근처에서 버스를 공격하여 7명의 승객을 사망케 한 AWB와 OB 지도자의 사면을 거부했다.

사면 소위는 이 공격에 가담한 AWB와 OB 추종자 2인에게 사면을 허가했다. 그러나 TRC 의사록에 제출된 첫 번째 토론 내용에서 소수측 의견으로 한 위원이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3명 모두에게 사면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 신청자들은 이전 AWB의 Richards Bay 지휘관이었던 51세의 David Petrus Botha와 Orde Boerevolk 하부조직의 리더인 43세의 Adriaan Smuts와 33세의 Eugene Marais이다. 이들은 dwaMashu 근처 버스 공격으로 1992년 12월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감형이 행해져 Botha는 징역 30년, Smuts와 Marais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PAC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더반 해안의 행인들을 공격한 일에 대한 복수로 1990년 10월 9일 아침 일찍 버스를 공격했다. 세 명은 7차례의 살인 행위와 27 차례의 살인 미수 행위로 기소되었다.

소위의 결정은 의장인 Hassen Mall 판사와 부의장 Andrew Wilson 판사, Bernard Ngeope 판사와 Adv. Chris de Jager SC에 의해 서명되었다.

소위의 다수는 버스 공격이 정치적 동기와의 연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는 Botha의 경우 범행 수행의 명령을 받은 증거가 없으며 이 공격이 AWB나 OB의 승인 하에 자행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Smuts와 Marais는 Botha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12. 이후의 연구과제

- ▶ 사면 내용과 기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 ▶ 개인 이외 기관, 당국, 사법부, 경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와 처리.
- ▶ 직접적 정치 희생자 이외에 아파트헤이트의 희생자라 주장하는 소외 계층의 보상 요구
- ▶ 국가재건 문제와 연관해서 TRC의 위상에 대하여
- ▶ TRC에 제기된 비판들
 - 피해자측
 - 가해자측
 - 형평성의 문제
 - 재정 문제
 - 기타 TRC 활동 중에 드러난 여러 문제

이유 없는 속임, 광차적 살인. (3·1·3·2)

87. 아르헨티나, 필리핀, 국제적 응징의 행정화는 뭘 했나?

「진실위원회」 구속. 진상조사 특별법

발 제 · 3

국제인권으로 본 '의문사' 문제

조 시 현 (성신여대 법학과 조교수)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저질러진 온갖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과거청산'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김대중정부에 들어와서는 '의문사'(疑問死) 문제를 필두로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¹⁾ 진정한 과거청산의 문제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현재의 것임은 이미 남미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²⁾ 이에 대한 국제사회적 논의는 기존의 보장체계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일련의 국제기준을 발전시켜나가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의문사 문제를 조명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의문사'의 개념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과 구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1) 예컨대 박원순,『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국현대사의 과거청산 연구』, 한겨레신문사 (1996); 박은정·한인섭,『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5); 조용환,『5·18 특별법과 전·노재판의 문제점』,『역사비평』1996 봄(제간 32호), 61.

2) 예컨대 박원순,『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열사회보』98년 4월호(통권 제18호), 23쪽; Priscilla Hayner, "Fifteen truth commissions: A comparative study", *Human Rights Quarterly* (No. 16, 1994); Naomi Roht-Arriaza (ed.), *Impunity and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I. 국제인권법상 의문사의 정의와 성격규정문제

1. 의문사의 정의시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분단상황에서의 정부수립, 한국전쟁, 연이은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국가 권력의 직·간접적인 관여 아래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수조차 알 수 없는 이른바 '의문사'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의문사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인 자체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을 말하며, 외부의 요인이 밝혀졌다 하여도 그 목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로 이를 정의하고 "국가공권력이 개입한 의문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³⁾

최근 의문사문제에 대한 각종 법안 역시 모두 의문사를 국가테러리즘의 한 형태로 보는 전제에서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민간단체들이 기초한 '의문사(등생명권침해사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청원 예정)은 1960년 4월 19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의문사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내걸고 의문사를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 규정짓는다. 한편●집권여당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1999.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의문사를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이라고 정의한다(제2조).⁴⁾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은 모두 국가권력의 관여와 의문사가 정치적 이유 또는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저질러진 것을 강조하는데 특색이 있다.

3) 김학철,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의문사 해결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1999. 3. 1) 발표논문, 2-3쪽. 또한 한인섭,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과 그 구제방법: 의문사와 시효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심포지움『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모색』(1999. 4. 12) 자료집.

4)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리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규정의 애매함은 그 동안 많이 지적되었다.

2. 의문사와 관련된 국제인권기준과 절차의 발전

이러한 정의시도를 바탕으로 의문사에 대한 국제인권보장체제의 접근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의문사는 종대하고 총체적인 인권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의문사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권의 초석인 생명에 대한 권리는 물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될 권리, 특히 영장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구금과 형벌의 부과에 있어서 사법적 보장을 받을 권리, 구금이나 수감증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거의 모든 권리를 계속하여 연쇄적, 누적적, 중층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⁵⁾ 또한 의문사가 국내분규, 전쟁, 독재정권이나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과 사찰기구들의 감시 속에 양심, 사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과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억압하는 가운데 자행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인권범죄는 히틀러가 '밤안개 정책'(Night and Fog policy)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사용한 이래⁶⁾ 지속적인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의문사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각종 인권조약과 유엔의 인권보장체제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⁷⁾ 침해의 종대성에 비추어 특별한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서의 '더러운 전쟁'(dirty war)중에 벌어진 수많은 '실종'사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의 외교역량과 자기 나라도 거명될 수 있음을 두려워한 많은 국가들로 인해 실종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⁸⁾ 이러한

5)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 제1007호(1976.3.23 효력발생; 1990.7.10 한국에 대하여 발효) 참조. 보다 상세한 기준으로는 법집행관 행동강령,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등이 있다(이상은 박찬운김선수 외,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정』, 역사비평사 (1993), 111이하에 번역됨). 또한 범죄와 권리남용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34 of 29 Nov. 1985) 참조.

6) Terence S. Coonan, "Legal and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Task of Making Former Torturers Accountabl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0 (1996), 512, 517 n. 16.

7)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는 Dominic McGoldrick, *The Human Rights Committee*, Clarendon Press(1994), p. 331.

8) 유네스코의 협약과 권고위원회의 관련활동에 대하여는 Stephen P. Marks, "The Complaint Procedur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2nd ed. Hurst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택해진 방법은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주제별' 절차(thematic mechanism)를 마련하는 것이었다.⁹⁾ 1980년 마침내 유엔 인권위원회는 처음으로 이러한 절차의 하나인 5인으로 구성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을 설치하도록 하였다.¹⁰⁾

를 불문하고 정부조사 또는 가족의 탐색의 결과 실종자의 운명과 행방이 밝혀지고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충분히 상세한 경우 실무그룹의 임무는 끝난다.¹⁵⁾ 주의할 것은 실무그룹의 접근방법이 누구를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실종사건이나 실종과정에 발생했을지 모를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이 실무그룹의 주요목적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데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을 밝혀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무그룹은 정부, 국제기구, 인도주의단체와 기타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직·간접으로 실무그룹에 제기된 개별사건들이 충분히 기록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조사되고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실종자가족들과 관련정부의 연락통로 구실을 한다.¹¹⁾

통고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된 사건은 관련 정부에 회부된다.¹²⁾ 실무그룹은 정부에 조사와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상기시킨다.¹³⁾ 실무그룹은 정부의 회신을 심리하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연례보고서에 요약한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자는 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¹⁴⁾ 사건 접수 3개월 안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실무그룹은 또한 강제실종이 문제되는 국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실종사의 생사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와 관련하여 198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또한 최초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으로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¹⁶⁾ 이 특별보고관은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한다.¹⁷⁾

국제진실위원회

강제실종이나 처형에 관한 사건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가별절차(country mechanism)에 따라 파견한 특별보고관이나 특별대표에 의해 다루어지기도 한다.¹⁸⁾ 나아가 엘살바도르에서는 유엔주도의 진실위원회가 구성되어 장기간 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¹⁹⁾ 1999년에는 인권소위원회가 토고에서의 초사법적 처형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제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촉구함에 따라 토고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²⁰⁾ 오늘날 이러한 국제진실위원회 방식의 사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15) 같은 문서, para. 26.

16) 결의 제1982/35호. 1992년에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7)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Report by the Special Rapporteur, Mr. Bacre Waly Ndiaye, UN Doc. E/CN.4/1994/7(7 December 1993), paras. 13-67; UN Doc. E/CN.4/1995/61(14 December 1994), paras. 9-11; UN Doc. E/CN.4/1996/4(25 January 1996), paras. 11-12 참조.

18) 예컨대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n Iran, UN Doc. E/CN.4/1991/35, para.73.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줄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용」, 『55차 유엔인권위 자료집(1999.3.22-4.30), 인권단체협의회 (1999), 1 참조.

19)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Truth for El Salvador: From Madness to Hope, UN Doc. S/25500, Annexes (1993). 또한 Thomas Buergenthal, "The United Nations Truth Commission for El Salvador",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7 (1994), 497 참조.

20)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ogo, Statement by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ssion made on 20 August 1999.

Hann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2), 86. 미주인권보장체제의 대응은 Jo M. Pasqualucci,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Truth Commissions, Impunity and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2 (1994), 321.

9) Henry J. Steiner & Philip Alst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Clarendon Press (1996), 422.

10) 결의 제20(XXXVI)호(1980). 실종문제는 아르헨티나 인권단체에 의해 1976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기준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 제2A(XXIX)호(1976). David Weissbrodt and Maria Luisa Bartolomei,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The Case of Argentina, 1976-1983", Minnesota Law Review, vol. 75(1991), 1009 참조.

11)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isappearances, UN Doc. E/CN.4/1988/19, paras. 16.

12) 같은 문서, para. 21.

13) 같은 문서, paras. 21, 24.

14) 같은 문서, para. 25.

진상규명을 위해 아예 상설 국제진실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와있다.²¹⁾

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과 미주협약

유엔 총회는 1992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하 '유엔선언')을 채택하고 현재 이에 관한 협약초안을 심의하고 있다.²²⁾ 유엔인권위원회가 강제실종 실무그룹으로 하여금 이 선언의 규정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작업방법을 고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실무그룹은 더이상 이에 관한 협약초안을 심의하고 있다.²³⁾ 더욱이 미주기구(OAS)는 1994년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이하 '미주협약')을 채택하고 미주 인권위원회와 인권법원이 제소와 통고를 다루도록 하였다.²⁴⁾

강제실종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저질러질 경우 모든 국가가 처벌할 의무를 지는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가 될 수 있음을 미주인권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²⁵⁾ 이는 다시 유엔선언에서 확인되었고 나아가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서 반인도적 범죄의 한 형태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²⁶⁾

21) Michael P. Scharf, "The Case for a Permanent International Truth Commiss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vol. 7 (1997), 375.

22)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총회결의 제47/133호 (1992.12.18).

23) 결의 제1994/39호. 이에 앞서 실무그룹은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조치와 시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정기적인 국가보고체계의 수립하여 실무그룹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평과 권고를 관계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실무그룹이 요청하면 이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정부는 대표를 파견해야 함을 인권위원회에 권고하였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isappearances, UN Doc. E/CN.4/1993/25, paras. 87-88.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대해 위원회는 앞의 결의에서 이 선언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봉착한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24) 제13조,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33 (1994), 1529.

25) Velásquez Rodríguez Cas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Series C, No.4, para. 153; 95 *International Law Reports* 233.

26) 과거청산을 둘러싼 불처벌문제와 국제형사법을 다룬 것으로는 예컨대 Kai Ambos, "Impuni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A case study on Colombia, Peru, Bolivia, Chile and Argentina",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18(1997), 1 참조.

II. '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

1. 강제실종의 정의

의문사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는 아직 명시적으로 내려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른 '강제실종'과 '초사법적, 악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의 강제실종선언은 전문에서 강제실종을 "정부의 다양한 부서 또는 수준(different branches or levels)의 공무원 또는 정부에 대신하거나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조직된 집단이나 사적 개인이 관련된 사람의 운명이나 행방을 밝히기를 거절하거나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밖에 두는 사람들의 체포, 구금 또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미주협약은 이를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권한부여, 지원이나 묵인하에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저질러졌든지 간에 사람 또는 사람들의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는 그의 행방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함에 의하여 그 사람이 적용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과 절차적 보장에 호소하는 것이 방해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도 비슷하게 "국가나 정치단체에 의하거나 이들의 권한부여, 지원 또는 묵인 아래 사람들을 장기간동안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할 의도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거절된 이들의 체포, 구금 또는 납치"를 뜻한다고 하고 있다.²⁸⁾ *이란사 이란*.

27) 이란이라크 전쟁이래 국제무력충돌 중의 강제실종에 대하여는 실무그룹은 활동하지 않기로 하였다. UN Doc. E/CN.4/1994/25, paras. 38-43.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전쟁과 관련하여 실무그룹은 입장을 바꿔 모든 실종자사건을 다루기로 하였다. 실무그룹은 유고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특별절차를 운영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시무총장에게 충분한 재정적, 인적 지원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Disappearances, UN Doc. E/CN.4/1994/26, para. 43.

28) 제7조 (2)(i).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183/9 (July 17 1998); 37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999 (1998).

2. 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이러한 강제실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책임의 소재는 특히 반정부군에 의한 실종과 같이 강제실종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유엔의 한 특별보고관은 국가기관에 의해 구금된 후에 실종된 경우, 국가기관이 믿을 만한 실종보고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이 효율적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믿을 만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상황을 밝히려고 행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가기구 안에서 개인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법상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²⁹⁾ 그는 특히 칠레에 있어서 (1)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된 적어도 600명의 사건이 규명되지 않았고, (2) 체포에 있어서 비밀경찰(DINA)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고, (3)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4) 정부는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5) 정부는 유엔과 다른 국제기관과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지웠다. 이러한 결론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받아들여져 아르헨티나 등지에서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었다.³⁰⁾

위와 같은 강제실종에 대한 정의를 의문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견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의문사의 경우 사인이 불명확할 뿐 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고 강제실종절차에 따른다면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게 된다.

그러나 강제실종은 실제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의문사로 이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인 이든 아니든 죽음의 전(前)단계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한 개념인 '강제실종'은 문제되는 의문사의 거의 모든 사례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강제실종'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의문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의문'의 죽음은 국가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며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수사의 부재나 증거 인멸, 은폐, 훼손 등의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살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의문사당한 사람이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진지한 진상규명노력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강제실종의 개념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저질러진 것뿐만 아니라 사인의 행위를 용인한 것을 포함한다. 이에 비추어 예컨대 '구사대'의 폭력에 따른 무고한 죽음 역시 이에 대한 국가의 공모가 밝혀지면 이에 따른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3. 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제 평화의 위한 속임수

강제실종의 경우 국가가 지는 의무로는 무엇보다 ① 강제실종을 실행, 허용, 용인하지 말 것,³¹⁾ ② 이를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³²⁾가 있다.

강제실종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유엔선언은 이에 대한 수사, 소추 및 처벌의무를 부과한다.³³⁾ 특히 ① 이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할 것,³⁴⁾ ②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³⁵⁾ ③ 강제실종피해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할 것,³⁶⁾ ④ 강제실종범죄(와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³⁷⁾ ⑤ 강제실종사건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 형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음,³⁸⁾ ⑥ 전쟁이나 비상사태 등을 이유로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음,⁴⁰⁾ ⑦ 이러한

31) 유엔선언 제2조; 미주협약 제1조 (a).

32) 유엔선언 제3조; 미주협약 제1조 (d).

33) 유엔선언 제13조, 제14조; 미주협약 제1조(b).

34) 유엔선언 제4조 (1); 미주협약 제3조.

35) 유엔선언 제17조 (1); 미주협약 제3조.

36) 유엔선언 제13조(6).

37) 유엔선언 제17조 (2), (3); 미주협약 제7조.

38) 유엔선언 제6조; 미주협약 제8조.

39) 유엔선언 제4조 (2); 미주협약 제3조.

40) 유엔선언 제7조; 미주협약 제10조. 참고, 「국가비상사태와 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1999) 발표논문.

29) Steiner & Alston, 앞의 책, 422-423.

30) 같은 책, 423.

범죄자는 사면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음.⁴¹⁾ ⑧ 관련자의 공직추방⁴²⁾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상과 관련하여 유엔선언은 국가배상의무와 범행자의 민사책임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⁴³⁾ 또한 가족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에 비추어 가족도 강제실종의 피해자임이 인정된다.⁴⁴⁾ 이러한 원칙들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반 보벤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⁴⁵⁾과 루이 주아네의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⁴⁶⁾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⁴⁷⁾ 강제실종 실무그룹도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상세한 유권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⁴⁸⁾

나아가 유엔선언은 강제실종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신속, 철저, 공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증인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현지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3조). 또한 국가는 제소자, 변호인, 수사관, 증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같은 조 (3)).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다룰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원칙들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의해 더욱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⁴⁹⁾

41) 유엔선언 제18조.

42) 유엔선언 제16조.

43) 제5조, 미주협약 제19조. 외국의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컨대 *Filartiga v. Pena-Irala*,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 Second Circuit, 30 June 1980, 630 F. 2d 876 (1980); 77 International Law Reports 169과 *Forti and Another v. Suarez-Maso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California, 1987, 672 F.Supp. 1531; 95 International Law Reports 625 참조.

44) 제1조 (2). 유엔 인권이사회도 같은 입장이다. *Quinteros v. Uruguay*, Communication No. 107/1981, UN Doc. A/38/40 (1983).

45)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inal report submitted by M. Theo van Boven, UN Doc. E/CN.4/Sub.2/1993/8 (2 July 1993), para. 137. 개정본으로는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UN Doc. E/CN.4/1997/104 (16 January 1997), Appendix.

46)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final report prepared by Mr. L.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resolution 1995/35, UN Doc. E/CN.4/Sub.2/1996/18 (20 June 1996); 우리말 옮김에는 김은영,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이달의 민변』 96년 9월호, 72쪽.

47) 현재 이 두 원칙들은 유엔 총회의 결의를 통한 선언채택을 목표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중이다.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r. M. Cherif Bassiouni,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43, UN Doc. E/CN.4/1999/65 (8 February 1999).

48) General comments on article 19 of the Declaratio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UN Doc. E/CN.4/1998/43 (12 January 1998), paras. 68-75 참조.

이밖에도 이 선언은 강제실종의 방지를 위하여 구금자의 권리(제10조)를 명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는 강제실종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다.⁵⁰⁾ 또한 관계조사기관은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권(제9조(2))을 가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의무와 구금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⁵¹⁾

III.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으로서의 의문사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하여는 아직 유엔선언이나 조약과 같은 문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정의는 특별히 내려진 것은 없으나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 사형과 관련한 생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
- (2) 국가공무원, 정부와 협력하거나 용인되는 준군사집단, 사적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과 연결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에 의한 살해협박과 즉각적인 초사법적 처형에 대한 두려움,
- (3) 고문, 방치(neglect)나 물리력의 행사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조건에 기인한 구금중의 사망,
- (4) 법집행공무원 또는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절대적 필요성과 비례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물리력의 행사에 기인한 사망,
- (5) 국가의 보안군이나 정부와 협력하거나 용인되는 준군사집단, 살인부대(death squads)

49) Principles 5-12, 15,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vised final report prepared by Mr.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resolution 1996/19, UN Doc. E/CN.4/Sub.2/1997/20 (2 Oct. 1997).

50) 제9조 (1); 미주협약 제10조. 또한 General comments on article 10 of the Declaratio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E/CN.4/1997/34, paras. 23-30 참조.

51) 제12조; 미주협약 제11조.

또는 다른 사설군대에 의한 공격에 기인한 사망이나 살인.

(6) 무력충돌중 국제인도법에 위반하여 특히 민간인과 다른 비전투원에 대한 생명권의 침해,

(7)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국가 또는 장소로의 추방, 송환 또는 귀환과 국경폐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국가를 떠나 망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8) 집단학살.

(9) 폭도에 의한 살해를 포함하여 당국자의 부작위에 기인한 죽음.

(10) 생명권 침해가 주장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할 의무의 위반,

(11) 생명권 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할 추가적 의무의 위반과 정부가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⁵²⁾

특별보고관은 또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적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과 기자, 정당원, 노동조합원, 시위참가자를 비롯하여 의견과 표현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침해문제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⁵³⁾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상황들은 '조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열거적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은 앞으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따라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강제실종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라는 정의 역시 강제실종에서와 같이 의문사와는 별개의 개념이고 어느 면에서는 의문사보다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이 법의 테두리 안 또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암살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살인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⁵⁴⁾ 이 가운데 특히 의문사와 관련되는 것은 (1), (2), (3), (4), (5), (10), (11)이다. '조사명백하다.'는 한마디로 합법성과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은 한마디로 합법성과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한

52)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s. Asma Jahangir,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68, UN Doc. E/CN.4/1999/39 (6 January 1999), para. 6. 또한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r. Bacre Waly Ndiaye,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72, UN Doc. E/CN.4/1993/46 (23 December 1992), paras. 42-68.

53) UN Doc. E/CN.4/1999/39, paras. 40-44.

54) 정치적 동기의 살인에 대한 유엔총회의 비난으로는 결의 35/72(1980.12.15).

모든 '죽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문사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⁵⁵⁾

또한 이러한 '처형'행위는 경우에 따라 '살인' 또는 '정치적 박해'로 인정되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⁵⁶⁾ 어느 행위가 조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적으로 강제실종에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처벌과 배상뿐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⁵⁷⁾

1989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초법적, 자의적, 약식처형의 효율적 방지와 수사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⁵⁸⁾ 이 원칙은 의문사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검과 관련하여 '적절한' 부검이 실시될 때까지 시신을 처리할 수 없고(12항), 부검이 독립적인 기관/사람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14항), 사망자 가족들의 부검 입회권(16항)을 규정한다.⁵⁹⁾

이러한 처형사건을 다루기 위한 기구와 관련하여 이 유엔원칙은 조사시 증인 등에 대한 강제권한을 가지는 독립조사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10항, 11항). 초사법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마찬가지로 인권유린 피해자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구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립인권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⁶⁰⁾

IV. 맷는 말

지금까지 논의에서 불법살인으로서의 의문사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동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명백하다. 국제공동체는 모든 인권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권기준과 조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비롯한 구제절

55) 의문사의 영어 표현은 'death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또는 'suspicious death'가 적절한 것 같다.

56) 예컨대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2조 (1) (a), (h).

57) 예컨대 UN Doc. E/CN.4/1999/39, paras. 32, 33, 67(사면관련), 85(체포구금관련입법의무), 86(조사기구의 독립성 등).

58) 결의 제1989/65호 (1989.5.24).

59) 더 상세히는 United Nations, *Manual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 New York (1991).

60) UN Doc. E/CN.4/1999/39, para. 95.

차를 발전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인권을 연속적으로 침해한 누적적 결과로서의 의문사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볼 때 강제실종과 초법적·자의적 처형에 해당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제기준이 의문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참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의문사와 관련된 범죄는 시효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아예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거나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범이므로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는 정부의 진지한 진상규명과 수사노력이 명백하게 기울여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유엔인권기구⁶¹⁾는 물론 앞으로 활동이 예정되어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한다.⁶²⁾

더욱이 남미와 동구국가들이 과거청산과 관련한 형사, 배상입법⁶³⁾을 하고있음에 비추어 '의문사'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확립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 의문사와 같은 사건들은 전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사의 여러 불법행위 유형과 피해정도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더욱 살찌우고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저질러지지 않는 국제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⁶⁴⁾

의문사를 비롯한 과거청산은 피맺힌 원한에 따른 복수가 아니라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내일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문사와 같은 생명권의 극단적인 침해를 외면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의문사되지 않을 권리'가 법전에 나오지 않음을 보고 혹시 모를 미래의 독재자가 회심의 미소를 띠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61)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배상관련 법률, 사망추정에 관한 법적 요건과 절차, 피해자에 대한 배상여부 등에 관한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E/CN.4/1998/43 (12 January 1998), para. 23.

62)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이봉해사건이 특별보고관에 전달되었다.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s. Asma Jahangir,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68, Addendum: Country situations, UN Doc. E/CN.4/1999/39/Add.1 (6 January 1999), para. 202.

63) 예컨대 Neil J. Kritz (ed.),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 III(Laws, Rulings, and Reports),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5) 참조.

64) 강제실종에 관한 통계자료로는 UN Doc. E/CN.4/1998/43, Annex II (Statistical summary: Cases of involuntary disappearances reported to the Working Group between 1980 and 1997).